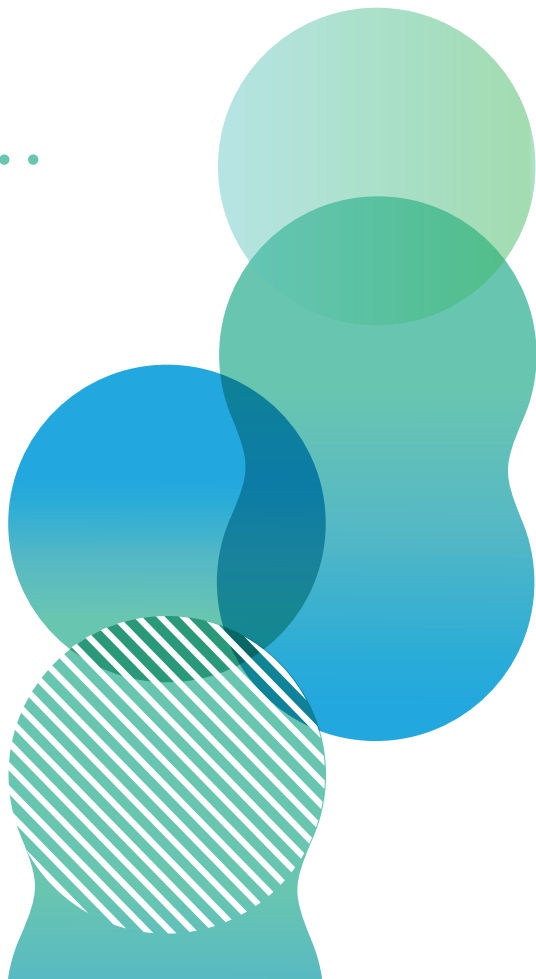


2022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차보고서





CONTENTS



인사말

제 I 장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개

| | |
|---------------------------|----|
| 1. 설립 목적 | 08 |
| 2. 조직 및 인력 | 10 |
| 3. 2022년 LIMAC 실적 및 성과 요약 | 12 |

제 II 장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실적

| | |
|----------------------|----|
| 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 16 |
| 2.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 33 |
| 3. 센터연구과제 | 59 |
| 4. 조사관련 사업 | 65 |
| 5. 조사지원 사업 | 70 |

제 III 장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성과

| | |
|----------------------|----|
| 1.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홍보 효과 | 78 |
| 2. 이력관리 백서 및 경평 요약 | 96 |

제 IV 장 부록

| | |
|---------------------|-----|
| 1. 기관 주요연혁 | 100 |
| 2.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일정 | 102 |
| 3. 주요행사 (2022년 기준) | 103 |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제 구현”

센터의 업무범위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업무01</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p> |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업무02</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타당성 조사 지침 개발 등 투자심사 운영 지원</p> |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업무03</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투자심사 사후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성과평가</p> |
|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업무04</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관련 교육, 투자사업 이력관리 등</p> |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업무05</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자치단체 자체 타당성 조사 검토</p> |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업무06</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적격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p> |
|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업무07</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4항)</p> |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업무08</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타당성 조사</p> |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업무09</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p> |




인사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법정전문기관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재정성과의 증진을 통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없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75건의 투자사업 중에서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26건을 반려, 자진 철회를 유도하여 17조 8,962억원 규모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역시 전체 의뢰사업의 29%를 재검토 대상으로 하여 2조 8,637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있어서도, 당초의 계획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타당성조사는 49건으로 목표 대비 107%,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타당성조사에 대한 검토는 목표치의 130%를 초과 달성하는 130건을 수행하였고, 우리 센터의 핵심 미션인 객관적이고 충실한 조사과제 수행에 있어서도 91점 이상을 획득하는 등 학계 전문가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2022년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모하는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정책과 제도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외연확장과 대외위상 제고에 있어서도 뜻깊은 한 해였다 자평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TF를 운영하면서 보증채무와 우발채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023년 우발채무가 사회경제 문제도 대두될 때 적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투자심사 면제사업의 대상과 범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후속 조치로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투자심사 면제사업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센터가 축적한 역량과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의 내실있는 수행을 목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행정안전부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실무경험과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된 한국부동산원 및 한국교통공단 등과 MOU를 체결하여 상호 간 조사기법 고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실무 공무원 대상 교육도 전년도 4회에서 6회로 확



대하였습니다. TOM(탐)나는 컨설팅 역시 106건을 제공하여 전년도 60건 대비 265% 증가하였으며, 만족도가 100%에 가까울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2년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국가 지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서, 그리고 이 분야의 선도 기관으로서 부여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대한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하계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
조 기 현



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LIMAC

2022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차보고서

PART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개

- 설립 목적
 - 조직 및 인력
 - 2022년 LIMAC 실적 및 성과 요약
-

01

설립 목적

설립 목적

- 500억원 이상 지방재정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함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 해당 회계연도에 출자기관에 출자하려는 총액이 전년도 자본상태표상 자본금의 5% 이상인 경우, 출연기관에 출자하려는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10%인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설립 배경

-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 조사 기관을 직접 선정함으로써 인한 조사 결과의 공정성과 중립성 상실
- 공신력 있는 타당성 조사 기준 및 방법론 미비로 인한 조사결과의 신뢰성 미흡
-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한 타당성 조사 전문 독립기관 설치 필요성 제시(감사원 감사연구원,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실태분석』, 2012.12)

설립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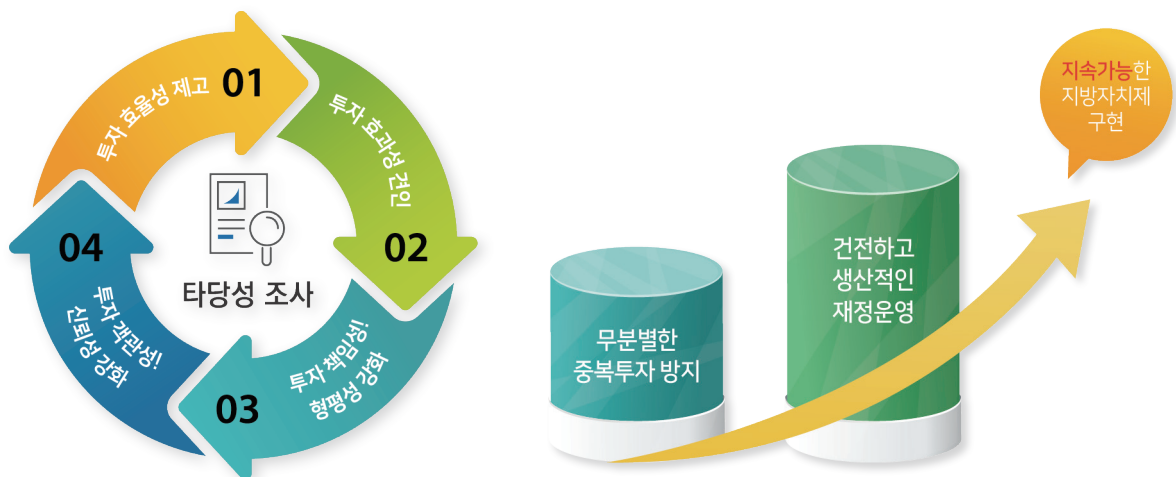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4-2호)
-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타당성 조사' 업무 전담을 위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신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년-제27호)
-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504호)

센터의 발전사

LIMAC 발전사



센터의 운영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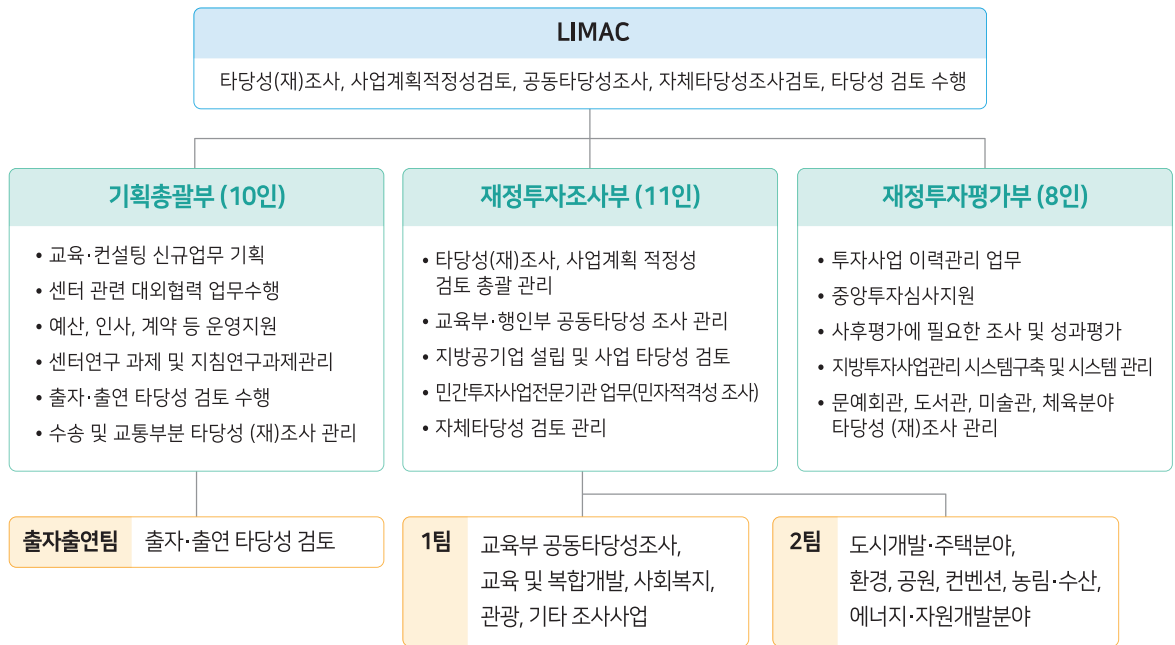
02

조직 및 인력

- ◆ LIMAC 센터는 원장 직속 기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타당성 조사 전문조직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 분야에 따라 3부 체계로 구성
 - 3부 체제 : 기획총괄부, 재정투자조사부, 재정투자평가부

- ◆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고유업무 추가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추가 지정으로 조사과제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조사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행 조직체계 내에서 부서별 기능(업무) 재배치
 - 기획총괄부 : TOM(탐)나는 컨설팅 및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수송 및 교통부문 타당성(재)조사 관리
 - 재정투자조사부 : 행안부&교육부 공동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괄관리
 - 재정투자평가부 : 투자사업 이력관리, 문예회관, 도서관, 미술관, 체육분야 타당성(재)조사 관리

- ◇ LIMAC 조직도(2022년 12월 기준)



- ◆ LIMAC 센터의 인적자원으로는 2022년 12월 기준 연구직(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부연구위원) 11명, 투자분석직(전문위원·전문분석원·분석원) 17명, 행정직 3명 등 총 31명임

- ◇ LIMAC 센터의 연도별 정원·현원 현황(2022년 12월 기준)

| 구분 | 2017 | | 2018 | | 2019 | | 2020 | | 2021 | | 2022 | |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 센터 | 합계 | 23 | 17 | 35 | 21 | 35 | 25 | 35 | 25 | 37 | 25 | 37 | 31 |
| | 연구직 | 11 | 5 | 14 | 6 | 14 | 8 | 14 | 9 | 16 | 7 | 14 | 11 |
| | 투자분석직 | 10 | 10 | 18 | 13 | 18 | 15 | 18 | 14 | 18 | 15 | 20 | 17 |
| | 전문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직 | 2 | 2 | 3 | 2 | 3 | 2 | 3 | 2 | 3 | 3 | 3 | 3 |

- ◆ LIMAC 센터는 2017년부터 타당성 조사 과제 등 연구 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2차례(상·하반기) 연구자 문위원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 25인에서 2022년 49명으로 분야별 자문위원 풀을 확대하면서 내실을 갖춰 운영 중(2021년 기준 46인으로 운영하였으며 2022년에 출자·출연 분야 3인의 전문가를 추가 위촉함)

03

2022년 LIMAC 실적 및 성과 요약

◆ 2022년 LIMAC의 타당성 조사 실적은 2021년 68건(약정건수) 대비 49건으로 수행건수가 감소하였으며, 자체타당성조사 검토는 2021년 142건 대비 감소한 130건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2021/2022년 타당성 조사 수행 현황 비교

| 차수 | 2021년 | | ⇒ | 2022년 | |
|-----------|---------|---------|---|---------|---------|
| | 의뢰건수(건) | 약정건수(건) | | 의뢰건수(건) | 약정건수(건) |
| 1 | 36 | 24 | | 20 | 15 |
| 2 | 24 | 17 | | 17 | 11 |
| 3 | 12 | 7 | | 11 | 5 |
| 4 | 26 | 17 | | 23 | 15 |
| 수시 | 1 | 1 | | 4 | 3 |
| 수행 금액(억원) | 89.1 | | | 66.9 | |
| 합계 | 99 | 68 | | 75 | 4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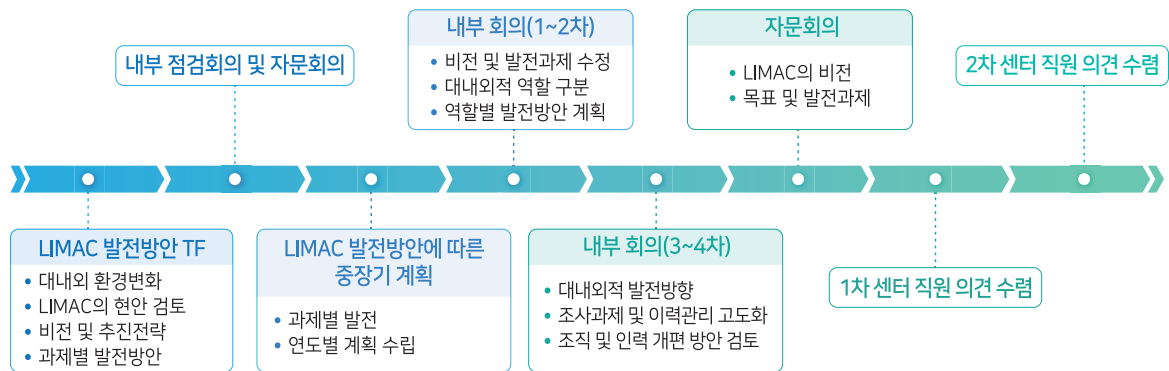
◇ 2021/2022년 타당성 조사 수행 현황 비교

| 수행건수(건) | 2021년 | | | | | | ⇒ | 2022년 |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수시 | 계 | | 1차 | 2차 | 3차 | 4차 | 수시 | 계 |
| 사업비 적정성 | 20 | 15 | 11 | 14 | 7 | 67 | | 20 | 13 | 15 | 15 | 5 | 68 |
| 자체타당성조사 | 21 | 17 | 11 | 24 | 2 | 75 | | 23 | 15 | 8 | 14 | 2 | 62 |
| 합계 | 41 | 32 | 22 | 38 | 9 | 142 | | 43 | 28 | 23 | 29 | 7 | 1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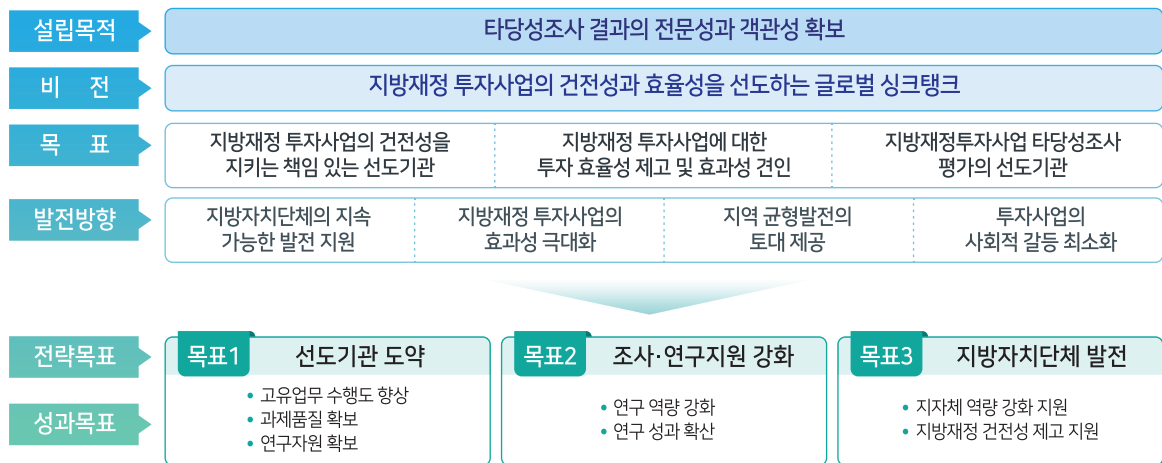
◆ LIMAC 중기발전계획 수립

◇ LIMAC 중기발전계획

- TF 운영을 통하여 구성원 스스로 위협과 기회 요인 공감대 형성, 강점과 약점, 발전 방향 도출
- 초안마련("22.1~5) → 전직원 의견수렴(2회) → 자문위원 자문(2회) → 자문위원회보고("22.11)
- 매년 대·내외 환경변화 반영한 5개년 연동계획(Rolling Plan) 운영 및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 전문가 자문회의(3회) 및 직원이견 수렴 등을 거쳐 비전 체계, 성과 목표, 성과달성도 지표 보완
- 성과지표별 목표치는 최근 3년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예정





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LIMAC

2022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차보고서

PART

III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실적

-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 센터연구과제
 - 조사관련 사업
 - 조사지원 사업
-

0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가. 2022년 타당성 조사 수행 실적

- ◆ 2022년도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총 75건이 의뢰되었으며, 이중 최종적으로 49건이 약정 (65.3%)되었음
- ◆ 약정된 2022년 타당성 조사 사업들 49건 중 43건의 사업이 조사 완료됨(2023년 현재 기준, 2건 해지, 4건 중지)
- 2021년 타당성 조사 수행률 현황

| 구분 | 차수 | 의뢰건수(건) | 약정건수(건) | 약정률(%) | 수행건수(건) | 수행률(%) |
|------|----|---------|---------|--------|---------|--------|
| 2022 | 1 | 20 | 15 | 75.0 | 14 | 93.3 |
| | 2 | 17 | 11 | 64.7 | 11 | 100.0 |
| | 3 | 11 | 5 | 45.5 | 5 | 100.0 |
| | 4 | 23 | 15 | 65.2 | 10 | 66.7 |
| | 수시 | 4 | 3 | 75.0 | 3 | 100.0 |
| 합계 | | 75 | 49 | 65.3 | 43 | 87.8 |

• 주: 약정률=약정건수/의뢰건수(약정해지 건수 포함), 수행률=완료건수/약정건수
 * 2022-1차 공동타당성조사 사업 해지 1건, 2022-4차 타당성조사 사업 해지 1건

- ◆ 2022년 타당성 조사 약정건수는 2021년 68건 대비 49건으로 27.9% 감소하였으며, 수행 금액은 2021년 89.1억원 대비 66.9억원으로 24.9% 감소함
- 2021년 타당성 조사 수행률 현황

| 차수 | 2021년 | | ⇒ | 2022년 | |
|-----------|---------|---------|---|---------|---------|
| | 의뢰건수(건) | 약정건수(건) | | 의뢰건수(건) | 약정건수(건) |
| 1 | 36 | 24 | | 20 | 15 |
| 2 | 24 | 17 | | 17 | 11 |
| 3 | 12 | 7 | | 11 | 5 |
| 4 | 26 | 18 | | 23 | 15 |
| 수시 | 1 | 1 | | 4 | 3 |
| 수행 금액(억원) | 89.1억원 | | | 66.9 | |
| 합계 | 99 | 68 | | 75 | 49 |

나. 2022년 1차 타당성 조사 수행 실적

◆ 2022년 1차 타당성 조사는 총 15건이 약정되었으며, 1건 해지 및 14건의 조사가 완료되었음

■ 2022년 1차 타당성 조사 수행 실적

| 시도 | 기초 | 사업명 | 조사 |
|----|-----|-----------------------------|-----------|
| △△ | 본청 | △△ ○○복합문화거점 조성사업 | 타당성조사 |
| ●● | 본청 | ◇◇ □□관광케이볼카 조성사업 | 타당성조사 |
| △△ | ◇◇시 | □□ ◇◇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 타당성조사 |
| △△ | ▼▼시 | ■■ □□ ●●▼▼▼▼ 타운 조성사업 | 타당성재조사 |
| ■■ | ○○시 | ○○ ▼▼ □□□□근린공원 조성사업 | 타당성재조사 |
| □□ | ◇◇시 | △△ ○○□□▲▲ 제4구간(□-○간) 도로개설사업 | 타당성조사 |
| ◇◇ | 본청 | □□ ▼▼도 △△△호선 ◇◇-□□ 도로확포장공사 | 타당성조사 |
| ▽▽ | 본청 | ○○ ▼▼도 □□□호선 □□-▲▲ 도로건설공사 | 타당성조사 |
| □□ | 본청 | ◇◇ ▼▼도 ○○○호선 △△-◇◇ 도로확포장공사 | 타당성조사 |
| ◇◇ | □□시 | ◇◇ □□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 사업계획적정성검토 |
| △△ | 본청 | ○○ □□-▲▲ 지방도 확포장공사 | 타당성조사 |
| ■■ | 본청 | ■■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 타당성조사 |
| □□ | □□시 | ◇◇ ○○▼▼지구 도시재생○○▼▼ | 타당성조사 |
| ◇◇ | ○○시 | △△ ○○□□택지-산업단지간 도로개설공사 | 타당성재조사 |

▶ □□ ◇◇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
개요

- ◇◇시는 ◇◇역을 중심으로 인접부지를 활용하여 각 수단간 분산되어 있는 환승시설 재배치, 환승시설 신설 및 개선, 환승주차장과 시설을 통해 교통수단 간 환승 연계체계 구축을 고려한 최적의 환승센터를 계획하고자 함
- 면적 : 11,285㎡(환승센터 : 9,869㎡, 환승통로 : 1,416㎡)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1,059.6억원으로 제시됨

| 검토안 | 총사업비 | 공사비 | 보상비 | 용역비 | 예비비 |
|--------|--------|--------|------|-------|-------|
| 금액(억원) | 748.35 | 609.98 | 0.68 | 70.34 | 68.03 |

종합
결론

- 본 사업의 경제성은 확보되지 못하였음
- 지상부 광장 조성 편익: 기존 광장 대비 공간이 통합되고 보행자의 접근성이 개선되므로 추가적인 효과는 존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 지상부 광장에 대한 구체적인 건설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상부 광장 조성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 환승거리단축 외에 환승체계 및 버스노선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는 경우 대중교통 수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사 중 불편익: 본 사업 공사 중 도로점용 범위 및 기간에 따라 불편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조사의 경제적 타당성과 달리 타당성이 감소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공사 중 불편익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공사 중 소통대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역 지하상가 계약해지 문제
 - ◇◇시(◇◇시시설관리공단)와 점주(임차인)간 계약에 따라 본 사업 시행 시 계약해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별도의 보상비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다만, 보상비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점주(임차인)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판례 검토 결과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계약갱신 가능 여부 및 보상비 발생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점주(임차인)의 민원은 본 사업 시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소통 및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
개요

- 시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장래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증가에 대비하고, 기존 매립시설의 잔여매립연한 확보를 위한 순환형 매립시설 도입시 굴착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현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부지 내에 소각시설 130톤/일을 증설하는 사업임
 - 기존 소각시설(170톤/일)과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임
- 부지면적 : 11,057.04㎡, 건축면적 : 3,019.92㎡, 연면적 : 6,989.51㎡(지하1층/지상5층)
 - 스토커식 소각시설 130톤/일 (130톤/일×1기) 증설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668.61억원으로 제시됨

| 검토안 | 총사업비 | 공사비 | 보상비 | 부대비 | 주민편익시설 | 예비비 |
|--------|--------|--------|-----|-------|--------|-------|
| 금액(억원) | 706.97 | 471.80 | - | 76.54 | 94.36 | 64.27 |

종합
결론

- 본 사업의 수요는 조성법 등에 따른 중장기 목표연도에 따른 계획인구 추정, 가동일수, 관광지 조성계획, □□시의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사업 등을 감안하여 소각시설의 적정 용량은 130톤/일로 산정됨
- 운영수지 분석 결과 운영수지비율은 0.26로 나타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의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본 소각장 증설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 통과가 선행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동의를 늦어질 경우, 투자심사 재심사, 시설용량 감축 또는 사업부지 변경 등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소각장의 시설용량은 □□시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사업을 전제로 분석된 결과이므로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반입량 감소로 소각시설 가동률이 크게 저하될 수 있으므로 소각장 증설사업과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사업 일정이 함께 고려되어 추진되어야 함
 - 소각장 및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사업은 같은 시기에 사업비가 투입되므로 □□시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두 사업 모두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속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택지-산업단지간 도로개설공사 타당성재조사

사업
개요

- 본 노선은 ○○시 □□택지구에서 공단삼거리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도로를 신설하여 해당 지역 간 우회거리를 단축시키고 기존시가지에서 ○○일반산업단지간 교통량 증가로 교통정체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구간인 본 노선 개설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개발 여건 조성
 - 산업단지와 □□택지 일대를 잇는 간선도로망 조성으로 교통 우회에 따른 불편해소와 도심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 본 사업은 2018년 ○○시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하고 2019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신설되는 교량과 관련해 철도 고속화 개량계획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어 LIMAC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함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684.06억원으로 제시되었음

| 검토안 | 총사업비 | 공사비 | 보상비 | 부대비 | 예비비 |
|--------|--------|--------|-------|-------|-------|
| 금액(억원) | 626.54 | 460.49 | 90.20 | 46.01 | 29.84 |

종합
결론

- 장래 수요 추정 결과 일평균 약 6,000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어 4차로 용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시가 제시한 바와 같이 대로 3-6을 재추진하여 본 사업과 연결된 구간이 국도 우회도로와 접속하게 된다면 통과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됨
- 국가철도공단의 교량 형하고 인상 요청으로 인하여 종단 상향이 필요하나, 이 경우 인근 민간시설의 접속처리 문제로 인하여 민원 발생 소지가 존재함
- 이에 따라 ○○시가 향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비 증가 및 민원발생의 주된 사유인 교량형하고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재협의 과정이 필요하며, 만약 형하고의 변경이 불가할 경우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추정된 교통 수요 대비 높은 설계 수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함

나. 2022년 2차 타당성 조사 수행 실적

◆ 2022년 2차 타당성 조사는 총 11건이 약정되었으며, 11건의 조사가 완료되었음

■ 2022년 2차 타당성 조사 수행 실적

| 시도 | 기초 | 사업명 | 조사 |
|----|------|-----------------------------|-----------|
| ◇◇ | 본청 | ◇◇ ○○플라자 건립사업 | 2차 타당성조사 |
| □□ | 본청 | ▽▽ △△마을 주거지보전사업 | 타당성조사 |
| ○○ | 본청 |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 타당성조사 |
| ◇◇ | 본청 | ◇◇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타당성조사 |
| ▲▲ | 본청 | ◇◇ ○○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사업 | 타당성재조사 |
| ▽▽ | ○○○시 | ▽▽ △△△ 군도■●호선(□□-○○) 도로개설공사 | 타당성재조사 |
| ◇◇ | △△시 | ◇◇ ○○(■●)지구 도시개발사업 | 타당성조사 |
| □□ | 본청 |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 타당성조사 |
| ○○ | ●●시 | □□□ 통합▲▲▲◆◆◆시설 건립사업 | 사업계획적정성검토 |
| ▽▽ | △△시 |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 사업계획적정성검토 |
| ▲▲ | ◆◆시 | ◇◇ ○○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 타당성재조사 |

▶ ◇◇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
개요

- ◇◇광역시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농식품 유통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매시장 이용자의 요구 충족 및 서북부권역의 도매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청과물동 증축, 구군류동을 신축하여 경매장, 저온저장고, 주차장, 중도매인 점포를 확장하고자 함
- 부지면적 : 107,912㎡, 연면적 : 81,450.11㎡
- 청과물동 증축 8,540㎡, 구군류경매장 신축 14,900㎡(지상 5,100㎡, 지하 9,800㎡)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539.28억원으로 제시됨

| 검토안 | 총사업비 | 공사비 | 보상비 | 부대비 | 기타 | 예비비 |
|--------|--------|--------|--------|-------|------|-------|
| 금액(억원) | 706.97 | 576.15 | 422.71 | 59.31 | 3.27 | 63.87 |

종합
결론

- 경제성 분석 결과, B/C는 0.45로 도출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사업추진 후에도 도매시장으로 동일하게 사용할 예정으로 용지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음
- 운영수지 분석 결과 운영수지비율은 0.605로 분석되어 사업시행 전(0.527)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시설현대화 이후 평균 운영수지는 -2,675백만원으로 2021년 운영수지(-2,303백만원) 대비 연간 약 3.7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함
- 현재 경매장 일부를 중도매인 상인이 점유하고 있고, 이에 경매장을 주차장에 임시 설치하여 운영 중이므로, ◇◇광역시에서는 불법점유 및 적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사에서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필요성'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223명(전체359명)이 응답을 하였고 이중 반대의견이 89명으로 2021년 4월 합의를출에서의 반대 인원 16명(전체367명) 대비 증가함에 따라 '사업 시행 시 발생할 영업 손실의 우려', '현재 시설로 충분' 등과 같은 불만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함
- 주차장 면적 및 면수에 대한 계획이 불확실하므로, 구체적인 면적 계획 보완이 필요함
- ◇◇광역시는 국비확보(농림축산식품부의 용자, 40%, 235.9억원)가 어려울 경우 해당 금액을 지방비로 대체할 계획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비 30%, 지방비 70%로 반영함
-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2022년~2026년)에 반영되어 있는 총사업비는 59,130백만원으로, 검토안 대비 11,130백만원이 부족하므로 재원조달(지방비에서 보전할 계획) 관련하여 추가 재정부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
개요

- △△시는 관내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세대 증가에 따라 종량제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소각시설의 소각효율 저하로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일부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소각시설 증설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처리과정상의 매립량을 최소화하여 매립연한 연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소각시 폐자원에너지 회수를 최대화(정부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부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특히 △△시는 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추진하여 시설 설치에 따른 구미시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자 함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765.6억원으로 제시함

| 검토안 | 총사업비 | 공사비 | 부대비 | 제세공과금 | 영업준비금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 추가 정부부담비 | 예비비 |
|--------|---------|-------|------|-------|-------|---------------|-------------|------|
| 금액(억원) | 1,030.4 | 711.4 | 56.3 | 72.2 | 6.1 | 135.4 | 0.4 | 48.8 |

종합
결론

- 검토안의 시설용량은 의뢰안과 동일한 150톤/일이지만 설계가의 적용, 주민편익시설의 반영(공사비의 20%), 민간사업자가 주무관청인 △△시에 요구한 사항 중 비용수반 사업비, 예비비의 반영(5%)으로 의뢰안과 사업비 차이가 발생함
- 주요 추정 결과 검토안은 시설용량(150톤/일)이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나, 산정된 실제 소각시설 규모는 151.0톤/일으로, 적용 시설규모 150톤/일 대비 1.0톤/일 초과되나, 주무관청 질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도 실재가동율이 321일 정도로 300일을 초과 운영중에 있어, 초기 3~4년 정도는 310일 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제시함
- 본 사업은 상위계획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관련법 및 상위계획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보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 검토 결과 폐촉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절차를 향후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부지원 요구사항은 사업시행자측과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시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항에 대해 수용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시의 재무계획은 민간사업제안자의 재무계획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재무계획에서 여러 변동요인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요구한 세전실질수익률 2.95%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한 처리방식은 사용료 인하,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시의 환수금 비율 상향조치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나 각 방식별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본 사업이 BTO-a 방식으로 추진됨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 등 향후 추진단계에서 △△시와 민간사업자간에 적절한 위험분담과 손익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2022년 3차 및 수시 타당성 조사 수행 실적

◆ 2022년 3차 타당성 조사는 5건, 수시(3차)는 1건으로 총 6건이 약정되었으며, 6건의 조사가 완료되었음

■ 2022년 3차 타당성 조사 수행 실적

| 시도 | 기초 | 사업명 | 조사 |
|----|-----|---------------------------------|--------|
| ▲▲ | 본청 | △△◇◇ □□동 재해취약지구(방재호안2단계) 정비사업 | 타당성조사 |
| ◇◇ | 본청 | ◇◇ △△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2단계 체육시설 건립사업 | 타당성조사 |
| ◇◇ | △△시 | □□ △△ GTX △△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 타당성조사 |
| □□ | □□시 | ○○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 | 타당성조사 |
| ○○ | ◇◇시 | ◇◇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 타당성재조사 |

■ 2022년 수시(3차) 타당성 조사 수행 실적

| 시도 | 기초 | 사업명 | 조사 |
|----|----|--------------------|--------|
| □□ | △△ | △△지식정보타운역(가칭) 신설사업 | 타당성재조사 |

▶ △△ ◇◇ □□동 재해취약지구(방재호안 2단계)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
개요

- △△ 해안선 일원은 지리적으로 외해에 개방되어 태풍 내습 시 월파로 인해 배후도로 공공시설물 파손 및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침수예방을 위하여 「전국 항만기본계획」의 방재호안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 방재호안 전체구간(L=1,854m) 중 ○○동 방재호안(L=854m), □□동 방재호안 1단계(L=500m)를 준공하였으며, 잔여구간인 ■구 □□동 방재호안 2단계 500m를 조속히 추진하여 항구적으로 태풍피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552.2억원으로 제시함

| 검토안 | 총사업비 | 공사비 | 보상비 | 부대비 | 예비비 |
|--------|-------|-------|-----|------|------|
| 금액(억원) | 788.3 | 642.5 | - | 74.1 | 71.7 |

종합
결론

- 경제성 분석 결과 B/C는 0.023이며, 일부 간접편익(복구비용 절감편익, 신규토지 조성편익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0.062~0.136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 인근으로 한정된다는 점, 총사업비가 184억원 증가한 요인이 작용하였기 때문임
-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는 재해취약지구 정비를 위해 전국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의거하여 방재호안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지방관리연안항관리청이 해양수산부에서 △△시로 이전되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본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는 마루높이가 충분한 여유고를 확보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사업 목적(침수피해 방지)을 달성할 수 있음
- 다만, 사업대상지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주거·상업비율 상향), 건축허가 과정에서 특혜논란이 존재했으며, 본 사업 추진 시 배후부지(나대지)에 대한 추가적인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일괄이양법의 시행으로 재원(국비 → 지방비)이 변경되었으나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보전할 계획이므로 타 사업에 배정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본 사업에 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2단계 체육시설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
개요

- ◇◇시는 노후된 △△종합운동장을 대체하는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 및 스포츠·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시가 ○○권 ◇◇경기대회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스포츠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기여하고자 함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1,595.75억원으로 제시됨

| 검토안 | 총사업비 | 공사비 | 보상비 | 부대비 | 기타 | 예비비 |
|--------|----------|----------|----------|-------|-------|--------|
| 금액(억원) | 2,903.80 | 1,415.02 | 1,239.07 | 80.48 | 42.66 | 151.34 |

종합
결론

- 본 조사에서 추정된 총사업비는 2,904억원으로 ◇◇시가 제시한 총사업비 1,596억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비해 보상비 1,239억원, 공사비 78.9억원, 부대비 8.6억원 등이 증가함. 총 사업비 차이가 큰 이유는 기부채납 예정으로 누락된 보상비를 재산정하였기 때문임. 경제성 분석 결과 0.22로 분석되어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운영수지 분석결과 본 사업의 운영수입으로 운영비용의 46.9%만 충당하므로 본 사업을 통하여 자치단체는 연평균 약 17억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1997년부터 △△종합운동장 대체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상위계획 반영,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사업 추진을 준비하였고, 재원조달 측면에서 재정부담 절감을 위하여 '서남부 도시개발사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준비와 추진의지는 높으나 사업계획은 보완이 필요함
- 다목적 체육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시는 전문체육시설 기능과 지역주민의 여가활용을 고려한 복합기능의 레포츠형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유사사례 대비 과도한 관람석을 계획하고 있어 운영 및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기적 대관 계획(프로구단 유치) 및 공연장 관련 설비 등에 대한 상세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정규모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계획검토가 필요함
- 주차장 계획, 배치도에 나와있는 진입광장·이벤트광장 등 체육시설 외 외부시설들에 대한 설치목적 및 규모, 내·외부 동선을 고려한 체육시설 배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체육시설 운영시기가 분절되어 ○○권 ◇◇경기 대회 및 전국체전 개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체육시설 미조성 및 주변 환경정비)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의뢰안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만 공사비 및 부대비 증가로 인한 추가 계상이 필요하고, 재원조달계획 중 국민체육기금 200억원 계상하고 있지만 확정지원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용예산 규모에 대한 검토를 통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이 필요함
- GB해제를 위한 관련 부처 협의를 진행중으로 제반 절차를 이행중이나 '23년 7월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것으로 변경예정'이어서 이에 맞춰 협의 및 심의를 준비중임
- ○○권 ◇◇경기대회 관련사항으로 유치신청서 내용과 현재 계획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유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않아 향후 실시계획 등 대회 준비에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 △△ GTX △△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재조사

사업
개요

- △△시는 장래 GTX-C 도입으로 증가되는 환승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환승센터를 건립하여 환승시설을 재배치, 신설하는 사업으로 버스정류장(2면), 택시정류장(8면), K&R 정류장(4면), 환승통로 3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지상 공영주차장(97면)을 293면의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사업임
 - 환승센터 옥상 및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생활 SOC 지원시설 및 PM(Personal Mobility)주차장을 도입하고자 함
- 부지면적 : 15,000㎡, 건축면적 : 4,544.53㎡, 연면적 : 15,342.88㎡
 - 필로티(Pilotis) 형태의 지하 1층, 지상 2층(환승센터 4,180㎡, 지하주차장 11,163㎡, 도로 236㎡, 공원 7,500㎡, 환승통로 A 463㎡, 환승통로 B 572㎡, 환승통로 C 366㎡)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692.59억원으로 제시됨

| 검토안 | 총사업비 | 공사비 | 보상비 | 부대비 | 운영설비비 | 예비비 |
|--------|--------|--------|--------|-------|-------|-------|
| 금액(억원) | 844.34 | 508.14 | 223.97 | 54.91 | 0.92 | 56.40 |

종합
결론

- 관련기준상 보행통로 폭은 3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환승통로 A와 C는 3m미만 이므로 설계 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제성 분석결과, B/C는 0.34로 도출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운영수지 분석 결과 운영수지비율은 1.263으로,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차수입 및 생활 SOC지원 시설의 임대수입이 연간 5.54억원으로 연간 운영비 4.39억원 보다 높은 것으로 검토되어 시비의 투입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 환승통로 A 설치의 경우 주변 상권과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주변 상가의 시인성 및 접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승통로 A 설치의 필요성 및 효과, 주변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승통로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역은 장래 GTX 도입으로 인해 △△시와 □□ 북부의 교통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역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타수단과의 환승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계획서에 제시된 일부 시설의 사업계획이 미비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 단계에서 본 사업에 포함된 생활 SOC 시설과 PM 주차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지식정보타운역(가칭) 신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사업
개요

- △△시 대규모 택지개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이 진행됨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 및 지식기반산업용지가 조성됨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역과 □□역 사이에 중간 역사를 신설하여, 개발계획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입주민의 교통편의성 증대하고자 함
- 면적 : 연면적 : 6,934.43㎡(지하2층), 사업의 면적 : 14,454.0㎡, 노선의 연장 : 0.215km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1,428억원으로 제시됨

| 검토안 | 총사업비 | 공사비 | 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 예비비 |
|--------|----------|----------|-------|--------|-------|
| 금액(억원) | 1,410.17 | 1,747.73 | 49.88 | 133.34 | 52.22 |

종합
결론

- 본 사업의 경제성은 확보되지 못하였음
-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구역의 경우에도 △△대로 등 대로를 횡단하여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한 접근시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임
 - △△시에서는 접근거리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상황임
 - 손실 보전금 최소화 및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도 개통 전까지 신설역사 수요 증대를 위한 접근성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정차역 추가로 인해 노선 전체의 표정속도 감소 및 통행시간 증가 또한 발생하게 됨. 특히 추가 역사 구간을 통과하는 이용객들의 경우 정차시간(평균 30초) 및 정차를 위한 가감속 시간으로 인해 통행 시간 증가가 발생하게 됨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통행시간 관점에서의 편익 값은 수치 자체로만 평가할 수 없으며 이용자 통행 특성에 따라 역사 신설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함
- △△지식정보타운역(가칭)의 운영은 노선내 타 역사와 동일한 운영 주체인 ▽▽▽가 맡도록 되어있으며 영업손실 발생시 △△시와 ▽▽가 이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시와 ▽▽간의 영업손실액 분담 비율은 △△시와 ▽▽ 간의 '△△지식정보타운 지하철역사 추진관련 협약서'(15.10)에 제시되어 있으며, △△시, ▽▽간에 해당되는 가처분면적의 외부통행유출량 비율(△△시 37%, ▽▽ 63%)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였음
 - 협약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영업손실에 따른 보전금은 본 사업 예산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며, 해당 비용에 대한 추가 투자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기존 추가역사 협약 사례를 바탕으로 손실보전금 규모를 재산정한 결과 연평균 4.78 ~ 7.91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과천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라. 2022년 4차 및 수시 타당성 조사 수행 실적

◆ 2022년 4차 타당성 조사는 15건, 수시(4차)는 2건으로 총 17건이 약정되었으며, 4건 중지 1건 해지 및 12건의 조사가 완료되었음

■ 2022년 4차 타당성 조사 수행 실적(약정 해지 사업 제외)

| 시도 | 기초 | 사업명 | 조사 |
|----|-----|--|-----------|
| ◆◆ | 본청 | △△ □□□ 복개철거 복원사업 | 타당성재조사 |
| ◇◇ | 본청 | △△ ○○공원 조성사업 | 타당성조사 |
| □□ | 본청 | ▼▼ 공공재활병원 건립사업 | 타당성조사 |
| □□ | 본청 | □□ ◆◆구 민간토지 활용 공동주택(상생주택) 공급사업 | 타당성조사 |
| ◇◇ | ○○구 | ◇◇ ○○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 사업계획적정성검토 |
| ▼▼ | 본청 | ■ ■ 차량기지 이전 사업 | 타당성조사 |
| ▼▼ | 본청 | ◆◆ △△ 군부대 이전 사업 | 타당성조사 |
| △△ | □□시 | △△ □□ 유네스코 창의도시파크 창, 작 | 타당성조사 |
| □□ | △△시 | □□ ○○ ▽▽지구 도시개발사업 | 타당성재조사 |
| △△ | △△시 | ◆◆ □□ ▲▲지구 도시개발사업 | 타당성재조사 |
| □□ | 본청 | ○○ △△~●● 지방도 확포장공사 | 타당성조사 |
| ○○ | 본청 | ○○도 ▽▽~□□간 연도교 개설사업 | 타당성조사 |
| ▽▽ | 본청 | □□ 지방도 ▼▼호선 △△~●● 도로개설 사업 | 타당성조사 |
| ▲▲ | ▼▼시 | □□ ▲▲삼거리~△△고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대로 ▼▼호선) 개설사업 | 타당성조사 |

■ 2022년 수시(4차) 타당성 조사 수행 실적

| 시도 | 기초 | 사업명 | 조사 |
|----|-----|--------------------|--------|
| ▼▼ | 본청 | △△의료원 외래진료센터 구축 사업 | 타당성조사 |
| △△ | ◆◆구 | □□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 타당성재조사 |

▶ △△ ○○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
개요

- ◇◇시는 ◇◇ ○○ 재개발 정비구역 내 장기간 방치된 공공부지(현, 공원 흔재)를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녹지와 휴게 심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공 선투자, 후회수 방식으로의 추진을 통해 장기간 담보 상태인 재개발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1,130억원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중 보상비는 1,003억원임(88%)

| 검토안 | 총사업비 | 공사비 | 보상비 | 용역비 | 시설부대비 | 예비비 |
|--------|----------|------|---------|-----|-------|--------|
| 금액(억원) | 1,371.25 | 38.7 | 1,225.9 | 3.8 | 0.1 | 102.73 |

종합
결론

- 경제성 분석 결과, B/C는 0.29로 도출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해 1) 공원시설을 소공원→근린공원으로 변경, 2) 공공공지(파출소 예정부지) 일부 해제 및 소단위 관리지구 전환, 3) 제31지구 정비계획 사항 변경을 추진하는 등 현재까지의 준비정도는 양호하다 판단됨. 또한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의 실현을 위한 실현 방안 중 하나로 「공공 투자 회수」 제도를 도입하여 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해왔다는 점 등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부정형 공간으로 된 소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녹지 및 휴게공간을 확충한다는 점에는 사업 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 투자 회수 시범사업 도입을 통한 재정비 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됨
 - 기부채납 받을 부지를 선투자로 확보하면 민간정비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 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나, 최근 원자재 등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민간 정비사업 시행자들의 개발추진 유인이 낮아짐에 따라 후회수 일정이 더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큼주차장 면적 및 면수에 대한 계획이 불확실하므로, 구체적인 면적 계획 보완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공공先 투자 시범사업으로의 추진방식이 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밀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
개요

- ◇◇구와 ○○구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간처리를 위해 ▽▽▽ 적환장, ◇◇클린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주민, 공원 및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으로부터 소음과 악취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
- 또한, 시설노후화 및 폐기물 집하공간 부족으로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음
- 이에 두 지자체는 ▽▽▽ 적환장(◇◇클린센터 포함)의 현대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민원을 해소 뿐만 아니라 관내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 지하에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함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838억원으로 제시되었음

| 검토안 | 총사업비 | 공사비 | 보상비 | 시설부대비 | 운영설비비 | 예비비 |
|--------|----------|----------|--------|--------|-------|--------|
| 금액(억원) | 2,831.56 | 1,926.69 | 464.23 | 204.51 | 0.7 | 229.13 |

종합
결론

- 본 사업은 ◇◇구와 ○○구가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임
- 공동자원순환센터 시설규모는 533톤/일로 산정됨(의뢰안 대비 49톤/일 감소)
- 부지사용협의, 세부협약 체결 필요
 -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국유지 토지에 대한 부지사용협약이 우선 되어야 함
 - 또한, 2018년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나, 두 자치구간 쟁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비용 및 수익분담 계획(운영비, 수익 귀속주체 등), 시설운영계획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별도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 운영수입 관련
 - 본 시설에서 선별된 유가물을 판매하면서 수입이 발생하며, 수입증대,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세입으로 귀속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며, 기존 시설 대비 선별효율을 증대시켜 운영수지를 개선토록 노력해야 함

▶ ○○도 ∇∇~□□간 연도교 개설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을 통하여 △△도~◇◇도~∇∇도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추진함
- 본 사업을 통해 ∇∇도와 □□도를 연결하여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취수공급,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정주 여건을 증진하고자 함
- 의뢰서의 총사업비는 1,439.60억원으로 제시됨

| 검토안 | 총사업비 | 공사비 | 보상비 | 부대비 | 예비비 |
|--------|----------|--------|--------|-------|--------|
| 금액(억원) | 1,272.05 | 898.60 | 162.48 | 95.33 | 115.64 |

종합
결론

- 본 사업의 검토안에서 수요분석시 사업구간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군(△△면, ▲▲읍) △△대교의 인당 통행발생 원단위를 산출하여 유발수요를 반영함
- 검토안에서 편익 추정 방법을 두가지로 제시함
 - (편익방법1 : 주야간 미구분) 지금까지 연륙교, 연도교사업에서 분석하던 방법으로 주간과 야간의 구분 없이 일반적인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여객선의 운항 시격의 기댓값만을 대기시간으로 반영함
 - (편익방법2 : 주야간 구분) 주간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분석하고 야간의 경우 시간대 분포를 활용하여 배를 타기위한 목적으로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기회비용으로써 시간활용 편익으로 반영함
- 본 사업은 상위 및 지역관계계획에서 이동 효율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소외지역을 위한 도로 공급, 생활복지를 위한 지역인프라 확충, 지역주민 교육·문화 향유 등에서 본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높음
- ○○도와 ◆◆군은 자원조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 추진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본 사업을 별도로 부기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경간장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된 총사업비와 해상 및 지역환경(통항안전, 조망·경관보존, 어업 및 양식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간장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상수도를 통한 수원지 활용의 경우 본 사업과 연계하여 중복적인 시설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함

02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가. 2022년 자체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 ◆ 자체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지방재정투자사업(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 비의무대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타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한 타당성 조사임
- ◆ LIMAC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타당성 조사(이하 자체타당성조사)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앙투자심사를 지원하고 있음
- ◆ 2022년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수행건수는 130건으로 계획(100건) 대비 130% 초과 달성함
 - 사업비 적정성 검토 68건 중 30건(44%)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대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함
 - 2022년 사업비 적정성 및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실적(130건)은 작년 대비 12건 감소

■ 2021/2022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현황 비교

| 수행건수(건) | 2021년 | | | | | | ⇒ | 2022년 |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수시 | 계 | | 1차 | 2차 | 3차 | 4차 | 수시 | 계 |
| 사업비 적정성 | 20 | 15 | 11 | 14 | 7 | 67 | | 20 | 13 | 15 | 15 | 5 | 68 |
| 자체타당성조사 | 21 | 17 | 11 | 24 | 2 | 75 | | 23 | 15 | 8 | 14 | 2 | 62 |
| 합계 | 41 | 32 | 22 | 38 | 9 | 142 | | 43 | 28 | 23 | 29 | 7 | 130 |

나. 2022년 자체타당성조사 검토의견서

◆ 2022년 1차 ■■대학교 □□캠퍼스 내 ▼▼▼체육관 건립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요약

| 구분 | 의뢰서 | 자타 | 비고 |
|------|-------|-------|----|
| 총사업비 | 467억원 | 467억원 | |
| B/C | 1.26 | 1.26 | |

| 구분 | 항 목 | 결과 |
|------------------|---|------|
| 총 사 업 비 | 공사비 · 부대비 1) 주요시설의 공사비 단가는 적정한가? → 건축공사비 단가(3,407천원/m)는 조달청「공사비 정보광장」의 체육시설유형 중 복합형체육시설 3곳의 사례를 기준으로 시점 보정(GDP 디플레이터의 연평균 증가율 4.01% 적용)하여 2021년 기준 공사비 272억원을 제시함 → 신재생에너지 설비비(855백만원)는 산업통상자원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산정함 | O |
| | 2) 공사비 및 부대비 중 누락된 항목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제로에너지인증공사비, 설계의도구현비, 설계공모보상비가 누락됨 | X |
| | 보상비 3)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2020년 개별공시지가(1,266천원/m) 기준으로 보상비를 산정하였으나, 2021년 개별공시지가(1,335천원/m) 기준으로 재추정할 필요가 있음. 대상지의 성격상 별도의 지장물 및 영업보상비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 사업부지는 ■■대학교에서 소유하며, □□시는 토지 무상사용 및 건물 소유를 전제로 하나,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사업비에 반영함(▼▼공공체육시설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대학교 교지 내이지만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건립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음) | O |
| | 4) 사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 해당없음 |
| | 5) 보상배율(총사업비, 경제성 분석용 총사업비)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사업대상지가 ■■대학교 소유 부지(무상사용)인 점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및 경제성분석용 보상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함(■■대학교는 총사업비의 22.05%에 해당하는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모사업 선정 후 구체적 협약 체결 예정) → 단, 경제성 분석에서는 기회비용으로서 사유지와 마찬가지로 배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X |
| | 예비비 6)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의뢰안은 공사비, 용역비, 보상비의 10%를 반영함. 단, 대상부지는 무상사용 예정이므로 예비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X |
| | 500억 7)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가? → 제로에너지인증공사비 등 일부 누락된 부대비를 반영하더라도 총사업비는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O |

| 구분 | 항 목 | 결과 |
|---|---|------|
| 운영비 | <p>8) 운영비 중 누락된 항목(재투자비, 감사료 등) 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p> <p>→ 재투자비가 누락됨</p> <p>→ 운영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시설유지관리비, 프로그램 사업비)로 구분하여 제시함. 인건비는 관내 체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운영인력 및 □□도시공사의 1인당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운영비는 □□국민체육시설(2019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반영함</p> <p>→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수행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비 추정연구(2020.12)」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과소 추정됨</p> | X |
| 경제성 분석 | <p>9) 수요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중력모형/간편법/설문조사/수용력/기타)</p> <p>→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2018,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동 주민 등록인구 대비 정기적 생활체육참여율(주1회, 60.1%), 운영종목 참여율(88.1%), 공공체육시설 이용률(27.8%)을 고려해 연간수요를 산정함</p> | 간편법 |
| | <p>10) (중력모형/간편법/기타) 준거시설은 적정한가?</p> | 해당없음 |
| | <p>11) (중력모형/설문조사/기타) 수요 권역은 적정한가?</p> <p>→ 배후인구는 대상지인 ◇◇동 인구만을 수요 권역으로 설정함. 인접지역은 수요 권역으로 고려되지 않음</p> | X |
| | <p>12) 수요 추정 과정(주변경쟁시설 미고려, 충원율 고려 등) 및 결과가 적정한가?</p> <p>→ 주변경쟁시설인 인근 생활체육관 및 수영장을 고려하지 않음</p> | X |
| | <p>13) 편익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객단가/CVM 등)</p> <p>→ 연간 시설 이용자의 ①여가활동 개선효과, ②의료비 절감효과 등의 간접편익을 산정함</p> | 간접편익 |
| | <p>14) (CVM) 영향권은 적정한가?</p> | 해당없음 |
| | <p>15) 편익 산정 단가(WTP or 객단가)는 적정한가?</p> <p>→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가이드 라인 연구』(2012, 서울연구원)의 시간당 여가활동 개선편익(1,108원/시간) 및 의료비절감 효과(7,848원/월)를 시점 보정하여 연간 시설 이용자 수에 적용함</p> | 0 |
| <p>16) 편익 추정 과정(편익 산정과정, 편익항목 중복) 및 결과가 적정한가?</p> <p>→ ①여가활동 개선효과, ②의료비 절감효과 등 간접편익의 산정 근거 및 참고 자료 제시가 필요하며, 특히 의료비 절감편익의 경우 연간 시설이용수요(545,108명)가 아닌 시설의 정기회원에 한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p> | X | |
| <p>17) 경제성 분석 시 주요 전제(할인율, 분석기간, 불변가격, 잔존가치 등)가 적정한가?</p> <p>→ 할인율 4.5%, 분석기간 30년을 적용함</p> | 0 | |

| 구분 | 항 목 |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무성 분석 (운영수지) | 18) 재무성 분석 시 주요 전제(할인율, 분석기간, 불변가격 등)가 적정한가?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수입, 비용 추정 결과가 적정한가? → 운영인력은 ▲▲국민체육센터, ▲▲센터 및 ▲▲센터의 면적단위당 필요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함 → 수입은 관내 유사시설인 □□국민체육센터의 2019년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추정함 → 프로그램 및 입장료 수입은 □□국민체육센터의 강좌별 평균 수강율에 따른 수강인원과 강습비 및 이용실적에 면적을 보정하여 추정함 → 대관 수입은 □□국민체육센터의 대관실적에 『□□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및 □□국민체육센터 2019년 대관요금을 준용하여 추정함 → 임대 수입은 2021년 1분기 경기도 지역별임대료(소규모상가) 평균을 적용하여 산정함 → □□도시공사에서 운영중인 유사시설(단일 사례)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단일 유사시설의 단위 면적당 수입을 본 사업의 수입으로 환산하여 신뢰성이 낮음. 지역 내 유사시설의 연간 운영비, 제공 서비스별·프로그램별 가동률 및 이용요금을 바탕으로 재산정 필요 | 판단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사시설 (최근3개년) 과 비교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시설명</th> <th rowspan="2">연면적(m²)</th> <th rowspan="2">연간 방문객</th> <th rowspan="2">운영방식</th> <th rowspan="2">운영인력</th> <th colspan="3">운영수지(백만원)</th> </tr> <tr> <th>비용</th> <th>수익</th> <th>순수익</th> </tr> </thead> <tbody> <tr> <td>본 사업</td> <td>7,972</td> <td>545,108</td> <td>위탁</td> <td>30</td> <td>2,252</td> <td>1,829</td> <td>-423</td> </tr> <tr> <td>◆◆국민체육센터</td> <td>6,537</td> <td>7,587</td> <td>위탁</td> <td>22</td> <td>1,742</td> <td>1,545</td> <td>-197</td> </tr> <tr> <td>▲▲주민편익시설</td> <td>5,309</td> <td>316,371</td> <td>위탁</td> <td>26</td> <td>1,565</td> <td>1,200</td> <td>-365</td> </tr> <tr> <td>□□□□스포츠센터</td> <td>5,563</td> <td>57,926</td> <td>위탁</td> <td>35</td> <td>2,056</td> <td>1,341</td> <td>-715</td> </tr> <tr> <td>○○스포츠센터</td> <td>9,994</td> <td>77,729</td> <td>위탁</td> <td>32</td> <td>1,678</td> <td>1,896</td> <td>218</td> </tr> <tr> <td>■□□□체육센터</td> <td>9,994</td> <td>269,304</td> <td>위탁</td> <td>21</td> <td>1,421</td> <td>965</td> <td>-457</td> </tr> </tbody> </table> → 본 사업의 운영수지는 유사시설(코로나 상황으로 2019년 이전자료 참고)보다 낮은 수준임 | 시설명 | 연면적(m ²) | 연간 방문객 | 운영방식 | 운영인력 | 운영수지(백만원) | | | 비용 | 수익 | 순수익 | 본 사업 | 7,972 | 545,108 | 위탁 | 30 | 2,252 | 1,829 | -423 | ◆◆국민체육센터 | 6,537 | 7,587 | 위탁 | 22 | 1,742 | 1,545 | -197 | ▲▲주민편익시설 | 5,309 | 316,371 | 위탁 | 26 | 1,565 | 1,200 | -365 | □□□□스포츠센터 | 5,563 | 57,926 | 위탁 | 35 | 2,056 | 1,341 | -715 | ○○스포츠센터 | 9,994 | 77,729 | 위탁 | 32 | 1,678 | 1,896 | 218 | ■□□□체육센터 | 9,994 | 269,304 | 위탁 | 21 | 1,421 | 965 | -457 | |
| 시설명 | 연면적(m ²) | | | | | | 연간 방문객 | 운영방식 | 운영인력 | 운영수지(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용 | 수익 | 순수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사업 | 7,972 | 545,108 | 위탁 | 30 | 2,252 | 1,829 | -4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체육센터 | 6,537 | 7,587 | 위탁 | 22 | 1,742 | 1,545 | -19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편익시설 | 5,309 | 316,371 | 위탁 | 26 | 1,565 | 1,200 | -3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포츠센터 | 5,563 | 57,926 | 위탁 | 35 | 2,056 | 1,341 | -7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포츠센터 | 9,994 | 77,729 | 위탁 | 32 | 1,678 | 1,896 | 2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육센터 | 9,994 | 269,304 | 위탁 | 21 | 1,421 | 965 | -4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이사항 기술 | →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의견 (과다/적정/ 과소/판단불가) | <table border="1"> <thead> <tr> <th>총사업비</th> <th>운영비</th> <th>수요</th> <th>편익</th> <th>경제성분석</th> <th>재무성분석 (운영수지)</th> </tr> </thead> <tbody> <tr> <td>과소 추정</td> <td>적정</td> <td>판단불가</td> <td>과다 추정</td> <td>판단불가</td> <td>판단불가</td> </tr> </tbody> </table> → 제로에너지인증공사비, 설계의도구헌비, 설계공모보상비가 누락되어 총사업비는 과소 추정됨. 또한 경제성 분석을 위한 보상비는 기회비용으로서 사유지와 마찬가지로 배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수요는 주변경쟁시설인 인근 생활체육관 및 수영장을 고려하지 않아 과다 추정되었으나, 수요권역을 ◇◇동으로 한정하여 적정성에 대한 판단 불가함 → 편익(간접편익: ①여가활동 개선효과, ②의료비 절감효과)의 산정 근거 및 참고 자료 제시가 필요하며, 의료비 절감편익의 경우 연간이용수요가 아닌 정기회원에 한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수입 산정을 위한 유사시설(단일 사례)의 적정성 검토가 요구됨 | 총사업비 | 운영비 | 수요 | 편익 | 경제성분석 | 재무성분석 (운영수지) | 과소 추정 | 적정 | 판단불가 | 과다 추정 | 판단불가 | 판단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사업비 | 운영비 | 수요 | 편익 | 경제성분석 | 재무성분석 (운영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소 추정 | 적정 | 판단불가 | 과다 추정 | 판단불가 | 판단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년 2차 ◇◇◇◇체육센터 신축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요약

| 구분 | 의뢰서 | 자타 | 비고 |
|------|-------|-------|-------------|
| 총사업비 | 427억원 | 242억원 | 의뢰서 기준으로 검토 |
| B/C | 0.355 | 0.455 | |

| 구분 | 항 목 | 결과 |
|------------------|---|------|
| 총 사 업 비 | 공사비 · 부대비 1) 주요시설의 공사비 단가는 적정한가? → 조달청의 체육시설과 업무시설 단가(2,871천원/m)를 활용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제시하지 않음 → 조달청 내 수영장이 없는 체육시설 사례의 평균단가는 2,480천원/m로 검토되었으며, 제로에너지공사비(5%)를 감안하더라도 의뢰안의 공사비 단가는 다소 높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됨 | X |
| | 2) 공사비 및 부대비 중 누락된 항목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제로에너지 공사비가 누락됨 → 조사설계비가 누락되었으며 책임감리비가 과소 추정되었음 | X |
| | 3)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사업부지는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예정이며 유사지역의 표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보상비를 산정함 | O |
| | 4) 사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 O |
| | 5) 보상배율(총사업비, 경제성 분석용 총사업비)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경제성분석 세부내역(총비용 및 총편익)을 제시하지 않아 확인 불가 | 판단불가 |
| | 예비비 6)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예비비가 누락됨 | X |
| | 7)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가? → 누락된 제로에너지인증을 포함한 적정 부대비 산정, 운영설비비 및 예비비를 반영하더라도,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O |
| | 운영비 8) 운영비 중 누락된 항목(재투자비, 강사로 등) 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검진설비 및 체육비품 내구연한에 따른 재투자비가 누락됨 | X |

| 구분 | 항 목 | 결과 |
|-------|---|-------|
| 경제성분석 | <p>9) 수요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중력모형/간편법/설문조사/수용력/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센터 이용인구는 스포츠파크 반경 4km에 해당하는 ◆◆구와 ◆◆구의 9개동 인구예『2018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의 체육활동참여율(62.2%)을 적용하여 수요를 추정함 → 산출된 스포츠센터 이용인구에 유입률 5%(가정)와 상기 조사에서 제시된 종목별 참여율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종목별 참여인원을 추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프로그램 강습 수요: 프로그램별 정원에 충원율(70~80)을 가정 • 일일입장객 수요: 산출된 프로그램 종목별 참여인원에서 체육프로그램 강습인원을 제외 | 기타 |
| | <p>10) (중력모형/간편법/기타) 준거시설은 적정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거시설이 없으며 유입률 5%의 근거 미제시 | 판단불가 |
| | <p>11) (중력모형/설문조사/기타) 수요 권역은 적정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 반경 4km를 수요 권역으로 설정한 사유 미제시 | 판단불가 |
| | <p>12) 수요 추정 과정(주변경쟁시설 미고려, 충원율 고려 등) 및 결과가 적정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권 설정 및 충원율 가정에 대한 근거 미제시로 판단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한 프로그램 종목별 참여인원에 충원율(70~80%)를 적용하였으나, 충원률의 근거가 미제시됨에 따라 관내 유사시설의 프로그램별 충원률 고려가 요구됨 → 관내 경쟁시설과의 이전수요가 고려되지 않음 | 판단불가 |
| 편익 | <p>13) 편익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객단가/CVM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 운영 수익으로 2가지를 제시함(재무적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프로그램 강습 : (종목별 프로그램 단가*강좌 수*정원*충원률)-강사수임료 • 일일입장수익 : (산출된 프로그램 종목별 참여인원-체육프로그램별 충원률이 반영된 등록인원)*입장료(2천원) → 대관수입으로 2가지를 제시함(재무적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체육관 대관수입: 체육대관 가능 타임 수*월계산요금*공실률*이용요금 • 중회의실 대관수입: 1회 대관료(96,800원)*가정한 연간 대관횟수(26회) → 사무실 임대수익(재무적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단체 사무실 임대료: 10만원(월 임대료)*2개소 • 판매시설 임대료: 유사시설의 임대료/m²*임대면적 → 스포츠과학센터 운영수익(재무적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수입: 20만원(회 이용료)*실업팀 인원 • 지원금: 300만원 정액 운영지원금 → ▼▼▼▼ 소속 선수 훈련비용 절감(경제적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장 이용료 절감: 월이용요금(100만원)*6개종목*12개월 • 체력단련비용 절감: 소속 선수인원*월이용요금(5만원)*12개월 → 체육회사사무실 임대료 절감(경제적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무실의 임대료/m²를 본 사업에서의 공급면적에 적용 | 객단가 |
| | <p>14) (CVM) 영향권은 적정한가?</p> | 해당 없음 |

| 구분 | | 항 목 |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제성 분석 | 편익 | 15) 편익 산정 단가(WTP or 객단가)는 적정한가? → 단가에 대한 근거 미제시 사항이 있어 적정성 검토 불가 • 다목적체육관의 대관요금, 종목단체 사무실 임대료, 스포츠과학센터 검진료, 6개 종목 월 이용요금 절감액 등 단가 근거 미제시 | 판단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편익 추정 과정(편익 산정과정, 편익항목 중복) 및 결과가 적정한가? → 가동률 등 활용자료의 근거 미제시, 대관 횟수 등 가정 값에 의한 수입 산출로 적정성 판단 불가 | 판단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경제성 분석 시 주요 전제(할인율, 분석기간, 불변가격, 잔존가치 등)가 적정한가? → 할인율 4.5%, 분석기간 30년을 적용하였음 → 부지의 잔존가치를 반영하지 않음 |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무성 분석 (운영수지) | 18) 재무성 분석 시 주요 전제(할인율, 분석기간, 불변가격 등)가 적정한가?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수입, 비용 추정 결과가 적정한가? → 연간 9.2억원의 운영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함 → 재무적 수익과 경제적 수익을 포함하여 연간 11억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제시하였으나, 재무적 수입만을 반영하여야 함 → 유사시설 대비 순수익이 낮은 수준으로 판단됨 |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사시설 (최근3개년) 과 비교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시설명</th> <th rowspan="2">연면적(m²)</th> <th rowspan="2">연간 방문객</th> <th rowspan="2">운영방식</th> <th rowspan="2">운영인력</th> <th colspan="3">운영수지(백만원)</th> </tr> <tr> <th>비용</th> <th>수익</th> <th>순수익</th> </tr> </thead> <tbody> <tr> <td>본 사업</td> <td>13,338</td> <td>-</td> <td>-</td> <td>12</td> <td>917</td> <td>760</td> <td>-157</td> </tr> <tr> <td>국민체육센터 ○○□□스포츠센터</td> <td>11,500</td> <td>953,963</td> <td>위탁</td> <td>28</td> <td>3,468</td> <td>2,443</td> <td>-1,025</td> </tr> <tr> <td>□□○○체육관</td> <td>14,146</td> <td>216,619</td> <td>위탁</td> <td>2</td> <td>559</td> <td>444</td> <td>-115</td> </tr> <tr> <td>◇◇·□□○○체육센터</td> <td>14,318</td> <td>336,400</td> <td>위탁</td> <td>28</td> <td>1,926</td> <td>1,148</td> <td>-777</td> </tr> </tbody> </table> <p>※ 국민체육센터의 유사시설은 □□○○시와 유사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중 체육시설의 연면적 및 토지면적의 규모 및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함 → 본 사업의 분석결과 유사 면적의 타 시설간 운영비 및 운영수입의 편차가 커 적정성을 검토하기 어려움</p> | | | | | | | 시설명 | 연면적(m ²) | 연간 방문객 | 운영방식 | 운영인력 | 운영수지(백만원) | | | 비용 | 수익 | 순수익 | 본 사업 | 13,338 | - | - | 12 | 917 | 760 | -157 | 국민체육센터 ○○□□스포츠센터 | 11,500 | 953,963 | 위탁 | 28 | 3,468 | 2,443 | -1,025 | □□○○체육관 | 14,146 | 216,619 | 위탁 | 2 | 559 | 444 | -115 | ◇◇·□□○○체육센터 | 14,318 | 336,400 | 위탁 | 28 | 1,926 | 1,148 | -777 |
| 시설명 | 연면적(m ²) | 연간 방문객 | 운영방식 | 운영인력 | 운영수지(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용 | 수익 | 순수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사업 | 13,338 | - | - | 12 | 917 | 760 | -1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체육센터 ○○□□스포츠센터 | 11,500 | 953,963 | 위탁 | 28 | 3,468 | 2,443 | -1,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육관 | 14,146 | 216,619 | 위탁 | 2 | 559 | 444 | -1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육센터 | 14,318 | 336,400 | 위탁 | 28 | 1,926 | 1,148 | -77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이사항 기술 | →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의견 (과다/적정/과소/판단불가) | <table border="1"> <thead> <tr> <th>총사업비</th> <th>운영비</th> <th>수요</th> <th>편익</th> <th>경제성분석</th> <th>재무성분석 (운영수지)</th> </tr> </thead> <tbody> <tr> <td>과소 추정</td> <td>적정</td> <td>판단불가</td> <td>과다 추정</td> <td>판단불가</td> <td>판단불가</td> </tr> </tbody> </table> | | | | | | 총사업비 | 운영비 | 수요 | 편익 | 경제성분석 | 재무성분석 (운영수지) | 과소 추정 | 적정 | 판단불가 | 과다 추정 | 판단불가 | 판단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사업비 | 운영비 | 수요 | 편익 | 경제성분석 | 재무성분석 (운영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소 추정 | 적정 | 판단불가 | 과다 추정 | 판단불가 | 판단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항 목 | 결과 |
|--------------------------------------|--|----|
| <p>종합의견 (과다/적정/ 과소/판단불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검토 결과, 건축공사비는 유사시설 대비 과소하게 반영되어 있고, 적정 공사비, 제로에너지비 공사비 및 부대비와 누락된 예비비 항목을 반영하면 총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수요는 영향권 설정 및 총원률 근거 미제시, 경쟁시설로 인한 이전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편익은 운영계획에 따른 객단가를 적용하였으나 객단가 설정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가정에 의한 가동률 적용 등으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경제성분석 결과는 잔존가치 반영 시 B/C가 증가할 수 있으나 적정성은 판단하기 어려움 → 운영비는 타 도의 유사사례 실적을 활용하였으나 사례선정 근거 미제시로 적정성 판단이 어려움. 관 내 유사규모 및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로 검토 필요 | |

◆ 2022년 2차 ◇◇◇◇체육센터 신축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요약

| 구분 (단위 : 억원) | 총사업비 | 공사비 | 부대비 (용역비 등) | 보상비 | 기타 (자산취득비) | 예비비 |
|-----------------|------|-----|----------------|-----|---------------|------|
| 의뢰서 | 453 | 266 | 3.2(13.2) | 73 | 80 | 18.3 |
| 재산정 | 517 | 301 | 3.2(13.2) | 73 | 80 | 47 |

| 구분 | 항 목 | 결과 | | | | | | | | | | |
|---|--|---|---|----|-----|---|----|-----------------|-----|---|----|-----------------|
| 총 사 업 비 | 1) 공사비의 단가는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이용했는가? →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조달청)을 활용함 - 시설별로 구분하여 개별 단가를 적용함 → 다만, 조정공사비에 적용된 이용자료 및 단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X | | | | | | | | | | |
| | 2) 공사비의 단가는 적정한가? | X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건축</th> </tr> </thead> <tbody> <tr> <td>의뢰서</td> <td> ○○동: 1,600천원(초등학교 기준) ○○지원동, ○○시설: 1,100천원(창고건물 기준) ○○센터: 2,400천원(의료시설 기준) ○○체험관, ○○학교: 1,800천원(초등학교 기준) </td> </tr> <tr> <td>출처</td> <td>조달청 유사사례(2017년)</td> </tr> <tr> <td>재산정</td> <td> 일반창고 기준(○○지원동, ○○시설): 1,374천원 교육시설 기준(○○동, ○○체험관, ○○학교) : 2,034천원 의료시설 기준(○○센터) 2,450천원 </td> </tr> <tr> <td>출처</td> <td>조달청 유사사례(2020년)</td> </tr> </tbody> </table> | | 구분 | 건축 | 의뢰서 | ○○동: 1,600천원(초등학교 기준) ○○지원동, ○○시설: 1,100천원(창고건물 기준) ○○센터: 2,400천원(의료시설 기준) ○○체험관, ○○학교: 1,800천원(초등학교 기준) | 출처 | 조달청 유사사례(2017년) | 재산정 | 일반창고 기준(○○지원동, ○○시설): 1,374천원 교육시설 기준(○○동, ○○체험관, ○○학교) : 2,034천원 의료시설 기준(○○센터) 2,450천원 | 출처 | 조달청 유사사례(2020년) |
| | 구분 | | 건축 | | | | | | | | | |
| | 의뢰서 | | ○○동: 1,600천원(초등학교 기준) ○○지원동, ○○시설: 1,100천원(창고건물 기준) ○○센터: 2,400천원(의료시설 기준) ○○체험관, ○○학교: 1,800천원(초등학교 기준) | | | | | | | | | |
| | 출처 | | 조달청 유사사례(2017년) | | | | | | | | | |
| | 재산정 | 일반창고 기준(○○지원동, ○○시설): 1,374천원 교육시설 기준(○○동, ○○체험관, ○○학교) : 2,034천원 의료시설 기준(○○센터) 2,450천원 | | | | | | | | | | |
| | 출처 | 조달청 유사사례(2020년) | | | | | | | | | | |
| | →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조달청)을 활용함 - 시설별로 구분하여 개별 단가를 적용함 → 다만, 조정공사비에 적용된 이용자료 및 단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 | | | | | | | | | |
| | 3) 부대비(용역비, 조사측량비 등)는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설계비, 감리비, 운영방안 연구비에 대한 적용 요율 등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 X | | | | | | | | | | |
| 4) 제로에너지 등 기타 누락된 비용이 있는가? → 제로에너지 공사비 추가 반영이 필요함 | X | | | | | | | | | | | |

| 구분 | | 항 목 | 결과 |
|------------------|-----|---|------|
| 총 사 업 비 | 보상비 | 5)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의뢰서 보상비는 □□도시공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부지 일괄구입 후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됨 → 보상단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 X |
| | | 6) 사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 의뢰서는 □□시에서 △△△부지 일괄 구입 예정으로 보상비를 산정하였으나, 구체적인 토지조서 확인이 어려워 판단이 불가함 | 판단불가 |
| | | 7) 보상배율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보상비 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적절한 보상배율이 적용되었는지 판단이 어려움 | 판단불가 |
| | 기타 | 8) 운영설비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운영설비비를 반영하지 않음 | X |
| | 예비비 | 9)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의뢰서는 공사비의 10%만 예비비로 반영하여 재산정이 필요함 | X |
| 종합의견 | | → 공사비와 예비비를 재산정하고, 누락된 운영설비비를 추가할 경우 총사업비는 5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 | |

◆ 2022년 1차 ○○○○○○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적정성 검토 요약

| 구분 (단위 : 억원) | 총사업비 | 공사비 | 부대비 (용역비 등) | 보상비 | 기타 (자산취득비) | 예비비 |
|-----------------|------|-----|----------------|-----|---------------|-----|
| 의뢰서 | 446 | 389 | 44 | 13 | - | - |
| 재산정 | 548 | 426 | 61 | 11 | - | 50 |

| 구분 | 항 목 | 결과 | |
|------------------|--|---|---|
| 총 사 업 비 | 1) 공사비의 단가는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이용했는가? → 2019년 ○○○○○○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편성 집행관리 지침(환경부)에 제시된 표준사업비를 적용함 | 0 | |
| | 2) 공사비의 단가는 적정한가? → 표준사업비 중 87.3%를 공사비로 적용함 → 유사사업의 사례를 조사해 비율을 적용함 | 0 | |
| | 3) 부대비(용역비, 조사측량비 등)는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부대비 항목은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으나, 적절한 요율을 반영해야 함 | X | |
| | 4) 제로에너지 등 기타 누락된 비용이 있는가? → 제로에너지 공사비 추가 반영이 필요함 → 해당 부지는 농지로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비용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음 | 0 | |
| | 5)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공시지가를 반영하였으나,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 사업대상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2,800~14,800원/㎡으로 조사됨(2021년 1월 기준) → 단, 개별공시지가, 보상배율, 지장물보상비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결과와 유사함 | X | |
| | 6) 사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 보상면적의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우나, 각 필지별 소유주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유지로 판단됨 | X | |
| | 7) 보상배율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보상배율을 반영해야 함 | X | |
| | 기타 | 8) 운영설비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0 |
| | 예비비 | 9)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예비비 10% 반영이 필요함 | X |
| 종합의견 | → 제로에너지, 연약지반공사비, 예비비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재산정할 경우 5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 | | |

◆ 2022년 2차 ◇◇◇◇체육센터 신축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요약

| 구분 | 의뢰서 | 자타 | 비고 |
|------|-------|-------|-------------|
| 총사업비 | 449억원 | 474억원 | 의뢰서 기준으로 검토 |
| B/C | 1.369 | 1.159 | |

| 구분 | 항 목 | 결과 |
|---|---|------|
| 총 사 업 비 | 공사비 · 부대비 1) 주요시설의 공사비 단가는 적정한가? → 『2020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의 체육센터(10,000㎡초과, 신축기준) 공사비 단가 3,536천원/㎡와 철거비(3~5층 기준) 단가 78.1천원/㎡를 반영함(건설공사비지수 4.7% (2021년 기준)) → 조달청 유사사례(수영장 포함시설) 단가는 3,633천원/㎡, 조달청 나라장터 유사사례 철거비 단가는 135천원/㎡수준으로 확인되어 공사비가 3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 X |
| | 2) 공사비 및 부대비 중 누락된 항목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누락된 항목 없음 | O |
| | 보상비 3)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사업대상지는 구유지로 부지면적에 2021년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추정함 → 기존(21-2차 투심의뢰) 대비 부지규모는 동일하며, 2021년 공시지가 적용에 따라 다소 증가함 → 자연녹지지역에 따른 법정 건폐율(20% 이하)을 고려할 때 전체 공원부지면적을 포함하거나, 건폐율에 맞는 부지면적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다만, 본 사업은 동일목적·동일부지의 재건축 사업으로 별도의 보상비 산정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X |
| | 4) 시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 구유지 100%임 | O |
| | 5) 보상배율(총사업비, 경제성 분석용 총사업비)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보상배율 미적용 | 해당없음 |
| | 예비비 6)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반영되지 않음 | X |
| | 500억원 초과 가능성 7)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가? → 누락된 비용(예비비)를 반영하고, 적정 단위공사비를 바탕으로 총사업비를 재산정할 경우 5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 | O |
| 운영비 8) 운영비 중 누락된 항목(재투자비, 강사료 등) 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기존 ◇◇◇◇체육센터의 2019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고정비성 비용과 변동비성 비용을 구분하여 연간 4,714백만원으로 산정함 | O | |

| 구분 | 항 목 | 결과 | |
|-------|-----|---|------|
| 경제성분석 | 수요 | 9) 수요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중력모형/간편법/설문조사/수용력/기타) → 편익 추정을 위한 별도의 수요추정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기존 시설 이용객수를 토대로 이용객수를 적용함 | 해당없음 |
| | | 10) (중력모형/간편법/기타) 준거시설은 적정한가? | 해당없음 |
| | | 11) (중력모형/설문조사/기타) 수요 권역은 적정한가? | 해당없음 |
| | | 12) 수요 추정 과정(주변경쟁시설 미고려, 충원을 고려 등) 및 결과가 적정한가? → 준공년도 이용객수는 기존 ◇◇◇체육센터의 2019년 이용객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차~4차년도는 이전년도의 대비 5%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후에는 4차년도 이용객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별도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음 | 판단불가 |
| | 편익 | 13) 편익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객단가/CVM 등) →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구분하여 직접편익은 실제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추정하고, 간접편익은 수영장 이용편익, 의료비절감+여가활동개선편익, 주차장개선편익으로 추정함 → 간접편익의 수영장 이용편익은 구민체육센터와 민간체육센터의 객단가 차액을 연간 이용인원에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의료비 절감편익은 정기 강습회원을 대상으로 산정, 여가활동개선편익은 비정기(수시방문)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정함 → 주차장 이용편익은 신축에 따른 증가된 주차면수에 대해 발생하는 주차요금으로 산정함 | 객단가 |
| | | 14) (CVM) 영향권은 적정한가? | 해당없음 |
| | | 15) 편익 산정 단가(WTP or 객단가)는 적정한가? → 직접편익의 경우 시장가격 등이 아닌 구민체육센터의 이용료를 적용하여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음 → 수영장 이용편익의 민간체육센터 객단가는 △△□□스포츠센터 최소이용료를 적용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시설 구성 및 프로그램 유사성 등의 검토가 누락되어 적정여부 판단이 불가함 → 의료비 절감편익의 절감효과는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의 경제적 효과』(서울대학교 스포츠산업연구센터, 2007)의 연간 효과를 2020년 기준으로 환산(7,700원/월)하여 적용함 → 여가활동개선편익의 객단가는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의 희망여가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당 여가비용(834원/시간)을 적용함 | 판단불가 |
| | | 16) 편익 추정 과정(편익 산정과정, 편익항목 중복) 및 결과가 적정한가? → 본 사업은 기존 시설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기존시설 이용객의 이전편익은 제외해야 하나, 편익 추정시 기존 시설의 전체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대추정의 우려가 있음 → 의료비절감편익은 정기 강습회원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일 입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여 과대추정의 우려가 있음 → 주차장개선편익은 신축으로 증가된 주차면수(22대)를 기준으로, 구민체육센터 이용객과 일반 주차이용객 비율을 7:3으로 설정하여 추정하였으나, 주차장은 지원시설로서 구민 체육센터 이용객은 편익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체육센터 이용객과 일반주차이용객의 비율(7:3), 회전률, 주차시간 등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 X |

| 구분 | 항 목 |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17) 경제성 분석 시 주요 전제(할인율, 분석기간, 불변가격, 잔존가치 등)가 적정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인율 4.5%, 분석기간 30년을 적용함 → 구유지에 대한 보상비는 포함하고 있으나, 토지의 잔존가치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았음. 다만, 본 사업의 경우 동일목적·동일부지의 재건축 사업으로 보상비와 잔존가치를 모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총사업비에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어 제외가 필요함 |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수지 분석 | <p>18) 수입, 비용 추정 결과가 적정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은 운영수입과 기타수입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기존 ◇◇◇체육센터의 2019년 실적을 토대로 산정하였음 → 운영수입은 2019년 이용객수를 기준으로 1~4년차까지 5%씩 증가한 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하였으며, 기존 시설 운영수입 및 이용객수를 통해 객단가를 산정하여 추정하였음 → 기타수입은 ◇◇◇체육센터 2019년 실적을 토대로 단위면적당 수입을 산정한 후 신규시설 면적에 곱하여 산정함 → 운영수입의 경우 이용객수 증가분(연간 5%, 초기 4년)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없어 적정성 판단이 불가함 → 기타수입에 주차장 운영수입이 누락되어 있음 | 판단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사시설 (최근3개년) 과 비교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시설명</th> <th rowspan="2">연면적(m²)</th> <th rowspan="2">연간 방문객</th> <th rowspan="2">운영방식</th> <th rowspan="2">운영인력</th> <th colspan="3">운영수지(백만원)</th> </tr> <tr> <th>비용</th> <th>수익</th> <th>순수익</th> </tr> </thead> <tbody> <tr> <td>본 사업</td> <td>10,213</td> <td></td> <td>위탁</td> <td>52</td> <td>4,714</td> <td>4,456</td> <td>-258</td> </tr> <tr> <td>□□구민체육센터</td> <td>8,847</td> <td>98,544</td> <td>위탁</td> <td>47</td> <td>2,716</td> <td>2,898</td> <td>182</td> </tr> <tr> <td>▲▲▲구민올림픽체육센터</td> <td>11,357</td> <td>53,078</td> <td>위탁</td> <td>37</td> <td>3,077</td> <td>1,648</td> <td>-1,428</td> </tr> <tr> <td>○□구민체육센터</td> <td>8,650</td> <td>91,809</td> <td>위탁</td> <td>24</td> <td>3,991</td> <td>4,551</td> <td>560</td> </tr> <tr> <td>□□□체육문화회관</td> <td>8,983</td> <td>925,000</td> <td>위탁</td> <td>37</td> <td>4,301</td> <td>4,287</td> <td>-14</td> </tr> </tbody> </table> <p>→ 본 사업의 운영수지는 유사시설보다 낮은 수준임</p> | 시설명 | 연면적(m ²) | 연간 방문객 | 운영방식 | 운영인력 | 운영수지(백만원) | | | 비용 | 수익 | 순수익 | 본 사업 | 10,213 | | 위탁 | 52 | 4,714 | 4,456 | -258 | □□구민체육센터 | 8,847 | 98,544 | 위탁 | 47 | 2,716 | 2,898 | 182 | ▲▲▲구민올림픽체육센터 | 11,357 | 53,078 | 위탁 | 37 | 3,077 | 1,648 | -1,428 | ○□구민체육센터 | 8,650 | 91,809 | 위탁 | 24 | 3,991 | 4,551 | 560 | □□□체육문화회관 | 8,983 | 925,000 | 위탁 | 37 | 4,301 | 4,287 | -14 | |
| 시설명 | 연면적(m ²) | | | | | | 연간 방문객 | 운영방식 | 운영인력 | 운영수지(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용 | 수익 | 순수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사업 | 10,213 | | 위탁 | 52 | 4,714 | 4,456 | -2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민체육센터 | 8,847 | 98,544 | 위탁 | 47 | 2,716 | 2,898 | 18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민올림픽체육센터 | 11,357 | 53,078 | 위탁 | 37 | 3,077 | 1,648 | -1,4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민체육센터 | 8,650 | 91,809 | 위탁 | 24 | 3,991 | 4,551 | 5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육문화회관 | 8,983 | 925,000 | 위탁 | 37 | 4,301 | 4,287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이사항 기술 | →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의견 (과다/적정/과소/판단불가) | <table border="1"> <thead> <tr> <th>총사업비</th> <th>운영비</th> <th>수요</th> <th>편익</th> <th>경제성분석</th> <th>재무성분석 (운영수지)</th> </tr> </thead> <tbody> <tr> <td>과소 추정</td> <td>적정</td> <td>판단불가</td> <td>과다 추정</td> <td>판단불가</td> <td>판단불가</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가 과소 추정되어 누락된 비용(예비비)를 반영하고, 적정 단위공사비를 바탕으로 총사업비를 재산정할 경우 5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 → 별도의 수요추정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편익산정을 위해 준공년도 이용객수는 기존 ◇◇◇체육센터의 2019년 이용객수를 기준으로 초기 1~4년간 5%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별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판단이 불가함 → 편익추정 시 기존 시설의 이전편익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의료비절감편익에 정기 강습회원이 아닌 일일 입장을 포함하였고, 주차장은 본 시설의 지원시설의 성격이므로 편익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과다 추정된 것으로 판단됨 → 운영수지에서 수입 중 주차장 운영수입이 누락되어있으며, 이용객수 증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없어 판단이 불가함 | 총사업비 | 운영비 | 수요 | 편익 | 경제성분석 | 재무성분석 (운영수지) | 과소 추정 | 적정 | 판단불가 | 과다 추정 | 판단불가 | 판단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사업비 | 운영비 | 수요 | 편익 | 경제성분석 | 재무성분석 (운영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소 추정 | 적정 | 판단불가 | 과다 추정 | 판단불가 | 판단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년 2차 ●●●●케이블카 조성사업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요약

| 구분 | 의뢰서 | 자타 | 비고 |
|------|-------|-------|----|
| 총사업비 | 350억원 | 350억원 | |
| B/C | 1.58 | 1.58 | |

| 구분 | 항목 | 결과 |
|---|---|----------------|
| 총사업비 | 공사비 부대비 1) 주요시설의 공사비 단가는 적정한가? → 수량산출, 예정가격 작성기준, 표준품셈 및 단가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음. 다만, 유사사례 석도공사비 및 건축공사비를 적용할 경우 공사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 판단불가 |
| | 2) 공사비 및 부대비 중 누락된 항목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누락된 항목 없으나,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이 과소 추정되었으며, 공사비 증가시 시설부대비가 연동하여 증가할 가능성 있음 | X |
| | 보상비 3)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군유지에 대한 보상비 14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상세내역 미제시 | 판단불가 |
| | 4) 사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 군유지에 대한 보상비 14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상세내역 미제시 | 판단불가 |
| | 5) 보상배율(총사업비, 경제성 분석용 총사업비)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군유지에 대한 보상비 14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상세내역 미제시 | 판단불가 |
| | 예비비 6)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반영되지 않음 | X |
| | 500억원 초과 가능성 7)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가? → 공사비 증가, 시설부대비 증가, 예비비 추가 등을 반영하더라도 500억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0 |
| 운영비 8) 운영비 중 누락된 항목(재투자비, 강사료 등) 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누락된 항목 없음 | 0 | |
| 경제성분석 | 수요 9) 수요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중력모형/간편법/설문조사/수용력/기타) → 중력모형(①)에 따른 수요와 지역관광객 유입율(②)에 따른 수요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함 | (중력모형 + 유입율)평균 |
| | 10) (중력모형/간편법/기타) 준거시설은 적정한가? → 중력모형(①)은 □□케이블카, 운영방식, 공인자료 등을 고려하여 ○○, △△, ●●을 적용하여 적정함(19년~20년 통계) → 지역관광객 유입율(②)은 중력모형 준거시설(○○, △△, ●●) 중 유입율이 높은 ●●을 제외하고, ○○, △△를 적용하여 적정함(18년~19년 통계) | 0 |

| 구분 | | 항 목 |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제성 분석 | 수요 | 11) (중력모형/설문조사/기타) 수요 권역은 적정한가? → 전국을 수요 권역으로 설정함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수요 추정 과정(주변경쟁시설 미고려, 충원율 고려 등) 및 결과가 적정한가? → 중력모형(A) 적용시 시설의 규모변수가 미적용됨(일반적으로 중력모형 적용시 규모변수(케이블카 연장, 케빈수, 수용인원 등)를 적용하여 준거시설과의 규모 차이를 반영하여 수요를 추정함) → 중력모형(A) 추정시 적용된 잠재수요가 무엇인지 불명확함(일반적으로 잠재수요는 인구를 적용함) |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편익 | 13) 편익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객단가/CVM 등) → 객단가에 기반한 금전적 수입(운영수입)으로 편익을 추정함 | 객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CVM) 영향권은 적정한가?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편익 산정 단가(WTP or 객단가)는 적정한가? → 객단가는 운영요금(15,000원)에 객단가비율(지역할인, 어린이 및 단체 할인 등 80%)를 적용한 12,000원을 적용함(2024년 기준) → 전체이용객의 10%가 부대시설 이용을 가정하여 부대시설 운영수입으로 1인당 15,000원을 적용함(단, 10%와 15,000원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편익 추정 과정(편익 산정과정, 편익항목 중복) 및 결과가 적정한가? → 객단가는 운영요금과 부대시설 운영수입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됨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경제성 분석 시 주요 전제(할인율, 분석기간, 불변가격, 잔존가치 등)가 적정한가? → 할인율 4.5%, 분석기간 30년 적용 → 토지의 잔존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야 함 → 분석 시 불변가격을 적용해야 함 |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수지 분석 | 18) 수입, 비용 추정 결과가 적정한가? → 수요 및 객단가를 바탕으로 수입을 산정하고,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비용을 추정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연간 4,253~4,474백만원 흑자) → 운영수지는 민간사업자 기준 분석결과이며, 실질적으로 ●●군은 매출액의 3%, 부대시설 영업이익의 5% 수준의 발전기금을 수입으로 가지게 됨(2025~2027년 기준 354백만원/년)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사시설 (최근3개년) 과 비교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시설명</th> <th rowspan="2">노선길이</th> <th rowspan="2">연간 방문객('19)</th> <th rowspan="2">이용요금</th> <th rowspan="2">운영주체</th> <th colspan="3">운영수지(백만원)</th> </tr> <tr> <th>비용</th> <th>수익</th> <th>순수익</th> </tr> </thead> <tbody> <tr> <td>본 사업</td> <td>1,396m</td> <td>923,923명('24, 예상)</td> <td>15,000원</td> <td>민간</td> <td>8,065</td> <td>12,539</td> <td>4,474</td> </tr> <tr> <td>□□</td> <td>1,500m</td> <td>1,666,153명</td> <td>15,000원</td> <td>민간</td> <td>6,112</td> <td>23,319</td> <td>17,207</td> </tr> <tr> <td>○○</td> <td>1,975m</td> <td>904,324명</td> <td>14,000원</td> <td>공공</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2,430m</td> <td>745,828명</td> <td>15,000원</td> <td>공공</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4,125</td> <td>10,912</td> <td>6,786</td> </tr> <tr> <td>▼▼</td> <td>3,230m</td> <td>-</td> <td>-</td> <td>민간</td> <td>4,503</td> <td>10,677</td> <td>6,173</td> </tr> <tr> <td>△△</td> <td>874m</td> <td>370,539명('20)</td> <td>10,000원</td> <td>공공</td> <td>3,025</td> <td>1,503</td> <td>-1,523</td> </tr> </tbody> </table> | 시설명 | 노선길이 | 연간 방문객('19) | 이용요금 | 운영주체 | 운영수지(백만원) | | | 비용 | 수익 | 순수익 | 본 사업 | 1,396m | 923,923명('24, 예상) | 15,000원 | 민간 | 8,065 | 12,539 | 4,474 | □□ | 1,500m | 1,666,153명 | 15,000원 | 민간 | 6,112 | 23,319 | 17,207 | ○○ | 1,975m | 904,324명 | 14,000원 | 공공 | - | - | - | ◆◆ | 2,430m | 745,828명 | 15,000원 | 공공 | - | - | - | □□□ | - | - | - | - | 4,125 | 10,912 | 6,786 | ▼▼ | 3,230m | - | - | 민간 | 4,503 | 10,677 | 6,173 | △△ | 874m | 370,539명('20) | 10,000원 | 공공 | 3,025 | 1,503 | -1,523 | |
| 시설명 | 노선길이 | | | | | | 연간 방문객('19) | 이용요금 | 운영주체 | 운영수지(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용 | 수익 | 순수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사업 | 1,396m | 923,923명('24, 예상) | 15,000원 | 민간 | 8,065 | 12,539 | 4,47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0m | 1,666,153명 | 15,000원 | 민간 | 6,112 | 23,319 | 17,2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75m | 904,324명 | 14,000원 | 공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30m | 745,828명 | 15,000원 | 공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25 | 10,912 | 6,78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0m | - | - | 민간 | 4,503 | 10,677 | 6,17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4m | 370,539명('20) | 10,000원 | 공공 | 3,025 | 1,503 | -1,5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항 목 | 결과 | | | | | | | | | | | | |
|-----------------------------|--|-------|------|-------|-----------------|----|-------|-----------------|-------|----|-------|----|-------|----|
| 유사시설 (최근3개년) 과 비교 | → 사업계획서 상 제시된 내용을 재정리하되, 공공시설운영현황(지방재정365)에 제시된 △△(●●케이블카) 사례를 추가 제시함 → 본 사업의 분석결과(수요 및 운영수지)는 유사시설과 유사한 수준이나, 공공시설운영현황(지방재정365)에 제시된 삼척사례는 타 사례(◆◆, □□□, ▼▼)와 다르게 적자 운영중임 | | | | | | | | | | | | | |
| 특이사항 기술 | → (신문기사) 최근 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케이블카 이용객수가 감소추세이며, ●●군 외 지자체에서도 케이블카 사업을 계획중인바 경쟁에 따른 수요감소가 우려됨 | | | | | | | | | | | | | |
| 종합의견 (과다/적정/ 과소/판단불가)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e0f2f1;">총사업비</th> <th style="background-color: #e0f2f1;">운영비</th> <th style="background-color: #e0f2f1;">수요</th> <th style="background-color: #e0f2f1;">편익</th> <th style="background-color: #e0f2f1;">경제성분석</th> <th style="background-color: #e0f2f1;">재무성분석 (운영수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과소 추정</td>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적정</td>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과다 추정</td>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적정</td>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과다 추정</td>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적정</td> </tr> </tbody> </table> <p>→ 공사비 증가, 시설부대비 증가 가능성이 있어 총사업비가 과소 추정되어 있음</p> <p>→ 수요는 중력모형(A) 적용시 시설의 규모변수가 미적용되고, 사용된 잠재수요가 불명확하여 과다 추정의 우려가 있음</p> <p>→ 객단가는 운영요금과 부대시설 운영수입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됨</p> <p>※ 기타 : 사업의 특수성(민간추진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준공 후 ●●군에 기부채납 후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가져갈 예정이며, 이후 ●●군과 별도 검토한 후 10년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유상으로 연장 사용할 수 있음 - 실시협약에 따르면 매출액의 3%, 부대시설 운영이익의 5%를 발전기금으로 기부 수익이 예상됨 | | 총사업비 | 운영비 | 수요 | 편익 | 경제성분석 | 재무성분석 (운영수지) | 과소 추정 | 적정 | 과다 추정 | 적정 | 과다 추정 | 적정 |
| 총사업비 | 운영비 | 수요 | 편익 | 경제성분석 | 재무성분석 (운영수지) | | | | | | | | | |
| 과소 추정 | 적정 | 과다 추정 | 적정 | 과다 추정 | 적정 | | | | | | | | | |

◆ 2022년 2차 ◇◇◇◇체육센터 신축 사업비 적정성 검토 요약

| 구분 (단위 : 억원) | 총사업비 | 공사비 | 부대비 (용역비 등) | 보상비 | 기타 (자산취득비) | 예비비 |
|-----------------|------|-----|----------------|-----|---------------|-----|
| 의뢰서 | 449 | 366 | 56 | 22 | 7 | - |
| 재산정 | 507 | 397 | 57 | - | 7 | 46 |

| 구분 | 항 목 | 결과 | | | | | | | | | | | | | | | |
|---|--|-------------------|--|---|----|-----|-----------|----------|----|--|---|-----|-----------|---------|----|-------------------|---------------|
| 총 사 업 비 | 1) 공사비의 단가는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이용했는가? → 『2020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의 체육센터(10,000㎡초과, 신축기준) 공사비와 철거비(3~5층 기준)에 건설공사비지수 4.7%(2021년 기준)를 반영함 | 0 | | | | | | | | | | | | | | | |
| | 2) 공사비의 단가는 적정한가? | X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신축</th> <th>철거</th> </tr> </thead> <tbody> <tr> <td>의뢰서</td> <td>3,536천원/㎡</td> <td>78.1천원/㎡</td> </tr> <tr> <td>출처</td> <td>『2020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의 체육센터 공사비</td> <td>『2020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의 철거비</td> </tr> <tr> <td>재산정</td> <td>3,633천원/㎡</td> <td>135천원/㎡</td> </tr> <tr> <td>출처</td> <td>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유사사례</td> <td>조달청 나라장터 유사사례</td> </tr> </tbody> </table> | | 구분 | 신축 | 철거 | 의뢰서 | 3,536천원/㎡ | 78.1천원/㎡ | 출처 | 『2020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의 체육센터 공사비 | 『2020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의 철거비 | 재산정 | 3,633천원/㎡ | 135천원/㎡ | 출처 |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유사사례 | 조달청 나라장터 유사사례 |
| | 구분 | | 신축 | 철거 | | | | | | | | | | | | | |
| | 의뢰서 | | 3,536천원/㎡ | 78.1천원/㎡ | | | | | | | | | | | | | |
| | 출처 | | 『2020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의 체육센터 공사비 | 『2020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의 철거비 | | | | | | | | | | | | | |
| | 재산정 | 3,633천원/㎡ | 135천원/㎡ | | | | | | | | | | | | | | |
| | 출처 |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유사사례 | 조달청 나라장터 유사사례 | | | | | | | | | | | | | | |
| | → 신축 및 철거 모두 재추정시 의뢰서의 공사비 단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검토됨 | | | | | | | | | | | | | | | | |
| | → 기존(21-2차 투심의회) 대비 규모는 동일하나, 공사비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용역비는 유사한 수준임 | | | | | | | | | | | | | | | | |
| 3) 부대비(용역비, 조사측량비 등)는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재산정된 부대비와 유사한 수준임 | 0 | | | | | | | | | | | | | | | | |
| 4) 제로에너지 등 기타 누락된 비용이 있는가? → 누락된 항목 없음 | X | | | | | | | | | | | | | | | | |
| 5)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사업대상지는 구유지로 부지면적 4,060㎡에 2021년 기준 공시지가(533천원/㎡)를 적용하여 추정함 → 기존(21-2차 투심의회) 대비 부지규모는 동일하며, 2021년 공시지가 적용에 따라 다소 증가함 → 다만, 본 사업은 동일목적·동일부지의 재건축 사업으로 별도의 보상비 산정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X | | | | | | | | | | | | | | | | |
| 6) 사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 구유지 100%임 | 0 | | | | | | | | | | | | | | | | |
| 7) 보상배율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보상배율 미적용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구분 | 항 목 | 결과 |
|------|--|----|
| 기타 | 8) 운영설비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체육센터 개관 당시 시설기준을 통해 산정한 것으로 제시함 | 0 |
| 예비비 | 9)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반영되지 않음 | X |
| 종합의견 | → 누락된 비용(예비비)를 반영하고, 적정 단위공사비를 바탕으로 총사업비를 재산정할 경우 5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 | |

◆ 2022년 3차 ▲▲▲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사업비 적정성 검토 요약

| 구분 (단위 : 억원) | 총사업비 | 공사비 | 부대비 (용역비 등) | 보상비 | 기타 (자산취득비) | 예비비 |
|-----------------|--------|--------|----------------|-------|---------------|-------|
| 의뢰서 | 445 | 375 | 35 | 35 | - | - |
| 재산정 | 385.39 | 284.23 | 34.53 | 34.75 | - | 31.88 |

| 구분 | 항목 | 결과 | | | | | | | | | | |
|---|---|--------------|--------|-----|--------------|----|---|-----|--------------|----|--|---|
| 총 사 업 비 | <p>1) 공사비의 단가는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이용했는가?</p> <p>→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2020),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조달청, 2017)의 단가의 평균을 적용한 것으로 제시함</p> <p>→ 단, 적용단가의 세부 산정내역을 미제시함에 따라 물가보정 등 산정과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에 한계가 있음</p> | 0 | | | | | | | | | | |
| | <p>2) 공사비의 단가는 적정한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공사비 단가</th> </tr> </thead> <tbody> <tr> <td>의뢰서</td> <td>1,937,394원/㎡</td> </tr> <tr> <td>출처</td> <td>-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2020) -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조달청, 2017) - 상기 자료의 공사비 단가를 평균한 수치를 제시함</td> </tr> <tr> <td>재산정</td> <td>1,446,267원/㎡</td> </tr> <tr> <td>출처</td> <td>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에 제시된 2016년~2021년 주차빌딩 사례의 단가</td> </tr> </tbody> </table> | 구분 | 공사비 단가 | 의뢰서 | 1,937,394원/㎡ | 출처 |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2020) -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조달청, 2017) - 상기 자료의 공사비 단가를 평균한 수치를 제시함 | 재산정 | 1,446,267원/㎡ | 출처 |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에 제시된 2016년~2021년 주차빌딩 사례의 단가 | X |
| | 구분 | 공사비 단가 | | | | | | | | | | |
| | 의뢰서 | 1,937,394원/㎡ | | | | | | | | | | |
| 출처 |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시, 2020) -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조달청, 2017) - 상기 자료의 공사비 단가를 평균한 수치를 제시함 | | | | | | | | | | | |
| 재산정 | 1,446,267원/㎡ | | | | | | | | | | | |
| 출처 |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에 제시된 2016년~2021년 주차빌딩 사례의 단가 | | | | | | | | | | | |
| <p>→ 공사비 단가는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 사업 적용 시 공사비가 과다추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p> <p>→ 서울시 공사비 단가는 복잡한 도심의 특성이 반영된 수치로 본 사업 대상지와 같이 인접건물과 이격 거리가 확보된 사업에 적용 시 신중할 필요가 있음</p> <p>→ 조달청의 2017년 자료에 제시된 □□시 주차장 4개 사례는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부대시설(토목, 조경) 공사비가 높은 특성을 보임. 이에 따라 단순 주차빌딩에 해당하는 본 사업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p> | | | | | | | | | | | | |
| <p>3) 부대비(용역비, 조사측량비 등)는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p> <p>→ 의뢰안에서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만을 반영함</p> <p>→ 본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설계과정에서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설계보상비 반영이 필요하며, 녹색건축인증에 따른 추가 설계비, 조사 및 측량비 등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p> <p>→ 의뢰안의 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의 제2종의 요율을 적용하였으나, 본 사업은 자동차관련시설로 제1종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2종의 자동차 관련시설은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이 해당됨. 1종은 해당시설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함)</p> | X | | | | | | | | | | | |
| <p>4) 제로에너지 등 기타 누락된 비용이 있는가?</p> <p>→ 의뢰안에 신재생에너지 추가 공사비 및 제로에너지 추가 공사비 등 반영이 필요함</p> | 0 | | | | | | | | | | | |

| 구분 | | 항 목 | 결과 |
|------------------|-----|--|------|
| 총 사 업 비 | 보상비 | 5)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사업대상 부지는 매입이 완료(2019.08)됨에 따라 보상비 약 35억원은 적정함 | 해당없음 |
| | | 6) 시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 기존 ○○주택도시공사 소유 부지를 △△△시가 매입 완료함 | 0 |
| | | 7) 보상배율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실제 매입 비용을 반영함 | 해당없음 |
| | 기타 | 8) 운영설비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주차시설 운영설비비 등은 공사비에 기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 0 |
| | 예비비 | 9)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의뢰안은 예비비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본 검토에서는 비용이 확정된 보상비를 제외한 비용의 10%를 반영함 | X |
| 종합의견 | | → 누락 비용(신재생에너지 및 제로에너지 관련 비용, 추가 설계비, 설계보상비, 조사 및 측량비) 반영 및 설계요율 변경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재추정한 결과 공사비는 적정 단가 적용시 추가적인 감소 가능성이 있고, 이와 연동하여 부대비 등도 감소할 수 있으므로 총 사업비는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 2022년 4차 ○○시 신청사 건립 사업비 적정성 검토 요약

| 구분 (단위 : 억원) | 총사업비 | 공사비 | 부대비 (용역비 등) | 보상비 | 기타 (자산취득비) | 예비비 |
|-----------------|-------|-------|----------------|-------|---------------|-----|
| 의뢰서 | 4,957 | 2,141 | 198 | 2,109 | 251 | 259 |
| 재산정 | 5,109 | 2,229 | 244 | 2,109 | 251 | 273 |

| 구분 | 항목 | 결과 | | | | | | | | | | |
|--|--|-----------------------------------|-----------------------------------|------|-----|-----------------------------------|----|-----------------------|-----|-----------------------------------|----|-----------------------|
| 총 사 업 비 | 1) 공사비의 단가는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이용했는가? | 0 | | | | | | | | | | |
| | 2) 공사비의 단가는 적정한가? | X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신축공사</th> </tr> </thead> <tbody> <tr> <td>의뢰서</td> <td>2,344천원/m²(기준년도 미제시)</td> </tr> <tr> <td>출처</td> <td>조달청 대형공공청사 유사사례 3건 평균</td> </tr> <tr> <td>재산정</td> <td>2,731천원/m²(21년 말 기준)</td> </tr> <tr> <td>출처</td> <td>조달청 대형공공청사 유사사례 8건 평균</td> </tr> </tbody> </table> | | 구분 | 신축공사 | 의뢰서 | 2,344천원/m ² (기준년도 미제시) | 출처 | 조달청 대형공공청사 유사사례 3건 평균 | 재산정 | 2,731천원/m ² (21년 말 기준) | 출처 | 조달청 대형공공청사 유사사례 8건 평균 |
| | 구분 | | 신축공사 | | | | | | | | | |
| | 의뢰서 | | 2,344천원/m ² (기준년도 미제시) | | | | | | | | | |
| | 출처 | | 조달청 대형공공청사 유사사례 3건 평균 | | | | | | | | | |
| | 재산정 | 2,731천원/m ² (21년 말 기준) | | | | | | | | | | |
| | 출처 | 조달청 대형공공청사 유사사례 8건 평균 | | | | | | | | | | |
| | → 유사사례 검토 결과 공사비 단가가 과소 추정된 것으로 검토됨 | | | | | | | | | | | |
| | 3) 부대비(용역비, 조사측량비 등)는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X | | | | | | | | | | |
| → 각종 인증(BF,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수수료가 누락됨 | | | | | | | | | | | | |
| 4) 제로에너지 등 기타 누락된 비용이 있는가? | X | | | | | | | | | | | |
| → 제로에너지 공사비 반영됨 | | | | | | | | | | | | |
| 보상비 | 5)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0 | | | | | | | | | | |
| | → 전체 시유지로 공시지가가 반영됨 | | | | | | | | | | | |
| | 6) 시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 0 | | | | | | | | | | |
| 기타 | 7) 보상배율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해당없음 | | | | | | | | | | |
| | 8) 운영설비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해당없음 | | | | | | | | | | |
| 예비비 | 9)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0 | | | | | | | | | | |
| → 보상비(시유지)를 제외하고 10% 반영됨 | | | | | | | | | | | | |

| 구분 | 항 목 | 결과 |
|------|---|----|
| 종합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사례(조달청 대형공공청사 8건)의 적정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고 누락된 각종인증비를 반영하면 총사업비가 약 152억원 증가한 5,109억원에 달할 것으로 검토됨 → 상기 검토한 총사업비는 ○○시에서 제시한 신축면적에 대한 비용 검토 의견이며 본 검토 범위는 적정면적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지 않음(적정 면적에 대한 검토는 타당성 조사 영역에 해당함) → 결과적으로 ○○시에서 제시한 신축면적에 대한 적정면적 여부는 별도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만 검토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LIMAC 타당성 조사에서는 적정 신축면적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의뢰서에 제시된 ○○시 공무원 정원은 00명으로 해당 인원을 고려하여 적정면적을 검토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부재함 - ○○시에서 투자심사의뢰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제시한 적정규모 면적 중 체력단련장, 매점, 휴게실을 주민편의시설로 정의하면서 청사 기준면적 제외시설로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상기 공간을 주민 편의시설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시에서는 현 사용 중인 별관에 대해 본 사업 추진 이후 매각 또는 유관기관 사용을 제시하고 있음. 별관 활용계획 수립에 있어 ■■■■청사 입주 기관과의 중복 여부 검토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 추진 이후 분청에 입주 예정으로 제시할 “교통정보운영과”의 경우, 현재 분청 소속의 조직이나 타 외부 청사 사용중으로 ○○교통정보센터 내 현 교통정보운영과 사용 면적에 대해 ○○시가 향후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투자심사의뢰서에서는 별관 외 분청 소속 조직이 근무하는 타 외부청사에 대한 본 사업 추진 이후의 활용계획을 제시하지 않음 | |

◆ 2022년 수시 □□ 테마파크 조성사업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요약

| 구분 | 의뢰서 | 자타 | 비고 |
|------|-------|-------|----|
| 총사업비 | 484억원 | 484억원 | |
| B/C | 0.88 | 0.88 | |

| 구분 | 항목 | 결과 |
|------------------|--|----|
| 총 사 업 비 | 공사비 · 부대비 1) 주요시설의 공사비 단가는 적정한가? → 의뢰안의 건축공사비(319천원/m)는 실시설계 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조달청 정보광장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전시공사비(52억원)는 향후 콘텐츠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2) 공사비 및 부대비 중 누락된 항목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제로에너지인증 공사비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음. 다만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제시되어, 실시설계 내역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였다면 건축공사비에 이미 포함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 0 |
| | 보상비 3) 보상비 적용 기준(개별공시지가 등)이 적정한가? → 사업부지 중 사유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2021년 6월 계약체결된 것으로 제시되어 의뢰안을 준용함 → 사업부지 중 공유지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 결과 128억원으로 산정되었으나, 2021년 공시지가로 산정시 135.8억원으로 증가함 4) 사유지가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가? → 공유지가 포함됨 5) 보상배율(총사업비, 경제성 분석용 총사업비)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경제성 분석시 공유지의 보상배율은 1.67배로 다소 낮은 비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나, 산정근거는 제시되지 않음. 따라서 지역별·지목별 보상배율을 적용하여 재산정이 필요함 | 0 |
| | 예비비 6) 예비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반영되지 않음. 의뢰서에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총사업비등록 협의시 484억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며, 실시설계로 사업 비용이 확정되어 예비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한 것으로 제시함. - 의뢰서에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12월 내 실시설계 승인 예정인 것으로 제시함 | 0 |
| | 500억원 초과 가능성 7)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가? → 의뢰안의 총사업비는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내역을 반영하여 제시한 것으로 확인됨 → 실시설계는 현재 진행 중으로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나, 총 사업비 금액은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된 총사업비 484억원 내에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제시함 → 다만,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추이가 지속될 경우 공사비 및 자재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0 |

| 구분 | 항 목 | 결과 |
|-----|--|------|
| 운영비 | <p>8) 운영비 중 누락된 항목(재투자비, 강사료 등) 없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p> <p>→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3.64억원)와 기타운영비(2.66억원), 장치소프트웨어 관리비(2.82억원), 교육 시설비(0.48억원)를 2024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함</p> <p>→ 재투자비와 강사료가 반영되지 않음</p> | X |
| 수요 | <p>9) 수요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중력모형/간편법/설문조사/수용력/기타)</p> <p>→ 이용객수는 준거시설 2곳을 설정하고 각 시설의 매력도(규모, 지역방문객수)를 고려하여 중력모형을 통해 본 시설의 수요를 추정함</p> | 중력모형 |
| | <p>10) (중력모형/간편법/기타) 준거시설은 적정한가?</p> <p>→ 국제 행사 유치 이후 활용되고 있는 관광단지(공원)를 준거시설로 선정하였으나, 시설 간 규모 및 방문객 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용비율 또한 0.04~0.80으로 차이가 큼. 따라서 ◆◆◆◆공원은 본 시설(58,835m)의 준거시설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p> | X |
| | <p>11) (중력모형/설문조사/기타) 수요 권역은 적정한가?</p> <p>→ 중력모형 활용시 전국을 영향권으로 설정하여 수요를 추정함 - 본 시설의 실질적인 수요권역을 고려할 때 전국으로 영향권을 설정한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p> | X |
| | <p>12) 수요 추정 과정(주변경쟁시설 미고려, 충원을 고려 등) 및 결과가 적정한가?</p> <p>→ 영향권을 전국으로 설정한 점, 준거시설 간 규모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수요 추정 결과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p> | X |
| | <p>13) 편익추정방법론은 무엇인가?(객단가/CVM 등)</p> <p>→ 편익은 시설별 재무적 객단가와 경제적 객단가(거리 및 여행비용)를 합산하여 산정하였음</p> | 객단가 |
| | <p>14) (CVM) 영향권은 적정한가?</p> | 해당없음 |
| 편익 | <p>15) 편익 산정 단가(WTP or 객단가)는 적정한가?</p> <p>→ 재무적 객단가는 연간 수요에 KDI(2015) 주요관광시설 객단가 중 ◆◆◆공원 조성사업, △△해양종합공원 조성사업의 단위면적당 객단가를 평균한 후 물가보정한 9,080원을 적용하여 산정함</p> <p>→ 그러나 단위면적당 객단가 산정시 본 시설과 기능이 유사한 일부 시설면적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함. 예를 들어, 객단가는 ◆◆◆공원은 전체 시설에 대한 객단가 29,457원을 적용하였으나, 면적은 전체 조성면적 2,314,000㎡ 중 116,864㎡만 적용하여 단위면적당 객단가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p> <p>→ 여행비용은 연간 수요에 대해 KDI(2015)에 제시된 교통수단별 운행비용, km당 운영비용, 1인 시간당 여행비용 등을 적용하여 지역별 방문자별 거리비용과 여행비용을 산정함</p> <p>→ 그러나 영향권을 전국으로 설정하여 거리 및 여행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음</p> | X |
| | <p>16) 편익 추정 과정(편익 산정과정, 편익항목 중복) 및 결과가 적정한가?</p> <p>→ 거리 및 여행비용(경제적 객단가)에 재무적 객단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편익 항목간 중복가능성이 있음</p> <p>→ 재무적 객단가 산정시 단위면적 당 객단가가 과다하게 산정됨</p> <p>→ 거리 및 여행비용 산정시 전국을 영향권으로 설정하였으므로 거리에 비례하여 비용이 증가하는 거리 및 여행비용 특성 상 편익의 과다 추정 우려가 있음</p> | X |
| | <p>17) 경제성 분석 시 주요 전제(할인율, 분석기간, 불변가격, 잔존가치 등)가 적정한가?</p> <p>→ 할인율 4.5%, 분석기간 30년을 적용함</p> | 0 |

| 구분 | 항 목 |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수지 분석 | <p>18) 수입, 비용 추정 결과가 적정한가?</p> <p>→ 각 시설별 수요(이용자수 또는 대관수)에 이용요금을 적용하여 수입을 산정하였으나, 추정 수요의 70%와 이용대금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p> <p>→ 경제성 분석용 운영비(초기 5년동안 매년 7억원)와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상 지출(매년 8억원)이 일치하지 않음. 운영계획서 상 운영비는 인건비(14명), 운영기본경비(인건비에 간접비 비율 적용)으로만 제시되어 사업비 등 추가적인 운영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p>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사시설 (최근3개년) 과 비교 | <p>→ 본 사업은 관광단지 유형의 사업으로 의뢰서에 제시된 준거시설 사례 외에 유사한 사례의 자료가 부재함</p> <p>→ 다만 대상지가 속한 ○○도 내 테마를 가진 관광시설의 주요 관광 지점 입장객 통계(문화체육관광부) (2017~2019년)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내외국인 합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명</th> <th>평균</th> <th>2017년</th> <th>2018년</th> <th>2019년</th> </tr> </thead> <tbody> <tr> <td>본 사업</td> <td colspan="4">136,868</td> </tr> <tr> <td>△△□□□관광지</td> <td>68,317</td> <td>57,621</td> <td>92,107</td> <td>55,358</td> </tr> <tr> <td>▲▲◆◆◆건축</td> <td>182,842</td> <td>276,226</td> <td>171,705</td> <td>100,595</td> </tr> <tr> <td>□□▲▲△△평화공원</td> <td>10,668</td> <td>8,986</td> <td>11,359</td> <td>11,659</td> </tr> </tbody> </table> <p>→ 상징성을 내포하고 체험 또는 관람이 가능한 도내 유사사례의 입장객 수를 검토한 결과, ▲▲◆◆◆건축을 제외하고 입장객 수가 10만명을 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음</p> <p>→ 본 사업의 수요는 유사사례보다 높은 수준이며, 본 사업의 콘텐츠, 접근성, 배후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요 및 편익 재추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p> | 시설명 | 평균 | 2017년 | 2018년 | 2019년 | 본 사업 | 136,868 | | | | △△□□□관광지 | 68,317 | 57,621 | 92,107 | 55,358 | ▲▲◆◆◆건축 | 182,842 | 276,226 | 171,705 | 100,595 | □□▲▲△△평화공원 | 10,668 | 8,986 | 11,359 | 11,659 | |
| 시설명 | 평균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사업 | 136,86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광지 | 68,317 | 57,621 | 92,107 | 55,358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 | 182,842 | 276,226 | 171,705 | 100,595 | | | | | | | | | | | | | | | | | | | | | | | |
| □□▲▲△△평화공원 | 10,668 | 8,986 | 11,359 | 11,659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이사항 기술 | →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의견 (과다/적정/과소/판단불가) | <table border="1"> <thead> <tr> <th>총사업비</th> <th>운영비</th> <th>수요</th> <th>편익</th> <th>경제성분석</th> <th>재무성분석 (운영수지)</th> </tr> </thead> <tbody> <tr> <td>적정</td> <td>과소 추정</td> <td>과다 추정</td> <td>과다 추정</td> <td>과다 추정</td> <td>판단불가</td> </tr> </tbody> </table> <p>→ 총사업비는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내역을 반영하여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담당자 유선 확인, 11.25),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된 총사업비 금액(484억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함</p> <p>- 다만,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추이가 지속될 경우 공사비 및 자재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음</p> <p>→ 수요 추정시 영향권을 전국으로 설정한 점, 준거시설 간 규모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수요 추정 결과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p> <p>→ 편익 추정 시 영향권을 전국으로 설정하여 거리 및 여행비용 편익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재무적 객단가와 거리 및 여행비용 편익(경제적 객단가) 간 편익이 중복되어 전반적으로 편익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p> | 총사업비 | 운영비 | 수요 | 편익 | 경제성분석 | 재무성분석 (운영수지) | 적정 | 과소 추정 | 과다 추정 | 과다 추정 | 과다 추정 | 판단불가 | | | | | | | | | | | | | | |
| 총사업비 | 운영비 | 수요 | 편익 | 경제성분석 | 재무성분석 (운영수지) | | | | | | | | | | | | | | | | | | | | | | |
| 적정 | 과소 추정 | 과다 추정 | 과다 추정 | 과다 추정 | 판단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03

센터연구과제

가. 센터연구과제 수행 실적

◆ 2022년에는 총 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

- 행정안전부와 내·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최근 정책적 이슈에 대응하는 센터연구과제 채택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시대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방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타당성조사 시 고려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도서지역 투자사업에 대한 심화 연구를 수행

◇ 2022년 센터연구과제 수행 실적

| 연번 | 유형 | 과제명 |
|----|------|---------------------------------|
| 1 | 연구과제 | 도서지역 연도·연육교 건립의 사회경제적 편익 연구 |
| 2 |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B/C기준 차등화 방안 연구 |

◆ 센터연구과제 요약

◇ 도서지역 연도·연육교 건립의 사회경제적 편익 연구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도·연육교 수요추정 방식의 신뢰성을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도·연육교 사업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수요추정 방식 검토) 연도·연육교의 수요예측 오차가 과도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실제 교통량이 공급된 시설규모의 용량 이내에 해당하며, 유발수요의 가산 비율 50%가 설문조사를 통해 산정한 추가 통행횟수 비율 55%와 유사한 점을 감안할 경우 기존 수요 추정 방식에 결격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 다만, 주말 또는 관광수요의 반영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적변화) 변이할당분석 및 이중차분분석을 통해 연도·연육교 개통이 인구이동의 자율성을 증가시켰으며,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의 증가 등 산업구조의 변화와 지가 상승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함
- (지역주민 설문조사) 연도·연육교 개통으로 교통접근성 및 교육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관광 활성화 및 소득 및 자산 가치 증대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체감함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도·연육교 사업의 교통수요추정 방식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연도·연육교 건립이 교통부문 외에도 사회경제부문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여 연도·연육교 사업에서 새로운 관점의 평가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B/C기준 차등화 방안 연구

| | |
|-------------|---|
| 연구의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C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균형발전의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석체계 및 방법론 마련 |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당성 조사에서의 균형발전 반영 사례검토(국가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국외사례) LIMAC 타당성 조사시 균형발전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체계 및 방법론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발전지수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지역 간 발전수준 격차 규명 지역발전지수와 B/C 간 영향력 검증 및 지역별 B/C 기준 차등화 정도 분석 지역별 B/C기준 차등화의 적용 가능성 및 방안 제안 |
| 기대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C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균형발전을 고려한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체계 확립 |

나. 타당성 조사 지침연구 수행 실적

◆ 2022년에는 총 5건의 타당성 조사 지침연구를 수행

- 중기발전계획의 타당성조사 방법론 고도화 실행과 최근 변화된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의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침연구 5과제 수행

◇ 2022년 타당성 조사 지침연구 수행 실적

| 연번 | 유형 | 과제명 |
|----|------|--------------------------------|
| 1 | 연구과제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예비비 추정연구 |
| 2 | | 지방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 개선 방안 연구 |
| 3 | |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정영향평가 체계 개선 방안 |
| 4 | | 지방자치단체 상생 발전을 위한 컨설팅 보고서 사례 작성 |
| 5 | | 투자심사 제외 대상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

◆ 센터연구과제 요약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예비비 추정연구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 적용하기 위한 예비비 요율을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함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총사업비 현황 분석)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투자심사 시점(이력관리 준비단계)과 완공시점(이력관리 추진 단계)의 총사업비 현황을 검토함
- (총사업비 변동에 대한 분석) 투자심사 시점(이력관리 준비단계) 대비 완공시점(이력관리 추진단계)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변화하였는지 비교하여 총사업비 변동률 분석을 수행함
- 총사업비의 주요 변동요인은 사업 주제, 사업 부문, 사업 규모, 사업 기간, 총사업비 중 보상비 규모 등이며, 이와 관련한 7개 가설에 대해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함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자료와 조달청 낙찰률 자료를 종합하여 총 590개의 사업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예비비 요율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총사업비에 1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당초 사업 부문별, 사업 기간별, 사업 규모별, 지역별 등 사업 특성별로 예비비 요율 차등화를 검토하였으나, 분석결과 차등화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용지보상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공시지가가 투자심사 총사업비에 포함되지만 완공시점 총사업비에는 제외됨에 따라 국공유지의 구분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의 제약으로 엄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없었음. 향후 용지보상비의 예비비 요율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임
- 투자심사 이후 사업비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 개선 방안 연구

연구의 목적

-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공공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2년 도입 이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투자사업 이력관리가 도입되어 투자심사 이후 사업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그러나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의 공개 및 환류 미흡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를 비롯하여 유사 분야에서 운영 중인 각종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사후관리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특히 운영단계까지 이력관리를 확대할 경우 문화체육시설에 한하여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검토함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지방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 현황 및 국내외 유사제도 검토) 국내외 유사제도를 조사 및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사업의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유사제도 간 연계하여 사전계획에 대한 정보가 타법에 따른 사후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시스템에 기반한 DB관리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
- (투자사업 이력관리 인식조사) 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반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향후 투자사업 이력관리의 개선방향을 설정함. 조사대상은 2022년 이력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 또는 취합·관리해야 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업담당자 또는 예산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행 이력관리제도 하에 축적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 공개 여부 및 공개범위, 공개 방식, 현재 매년 선정하고 있는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선정 필요성, 선정 기준, 향후 운영단계까지 이력관리제도를 확대할 경우, 도입 찬성 여부, 제도 운용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문화체육시설 운영단계 이력관리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업유형 중 문화체육시설에 한정하여 운영단계까지 이력관리를 확대할 경우, 이력관리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심층 사례 분석 및 운영단계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도입을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대해 검토함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투자심사 이후 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모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정영향평가 체계 개선 방안

| | |
|-------------|--|
| 연구의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으로 야기되는 재정영향평가의 내실화와 재정의 건전성 및 책임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 적합한 재정영향평가 방법의 개선을 연구하고자 함 |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현황분석, 재원조달 가능성 분석, 재정변화 분석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개선 필요성 제기 및 혼용되는 용어 정리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기준을 새롭게 정리하여 가용재원 산출모형 개발 영향평가 기간(재원조달이 완료되는 시점), 지표설정 방식(공동 및 특정지표로 구분), 분석 편의성 확보(지방재정분석 지표 활용) 측면에서 재정영향평가 방법의 개선을 제시함 공동지표로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의무지출비율 등을 제안함 재정영향 평가 시 사업 유형을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자체/보조금/지방채/민자유치로, 사업방식에 따라 재정사업/SPC/위탁개발로, 운영방식에 따라 직영/민간위탁/출자출연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함 |
| 기대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중 재정영향평가 과정에서 제도적 측면, 가용재원 산출 측면 및 재정영향평가 측면 등에서 개선점이 발견됨 정보산출과정의 편의성, 분석 대상 시기의 확대, 영향평가의 직접 연관성 등 3가지 기본 방향 하에서 제도적 측면, 가용재원 추계의 적절성, 지방재정영향 평가 가능성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

◇ 지방자치단체 상생 발전을 위한 컨설팅 보고서 사례 작성

| | |
|-------------|--|
| 연구의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강원도 원주시 이전 이후 강원도와의 상생과 협력의 노력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상생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 강원도 및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컨설팅을 수행하고자 함 |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국가 및 지역 계획 및 지방재정과의 연계성, 총사업비 조달 능력, 재정 효율성 달성,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추진시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해소 등에 대해 컨설팅을 수행함 컨설팅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컨설팅 요청으로 이를 수행함 |
| 기대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객관적 시각에서 컨설팅하였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 투자심사 제외 대상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제외하고 있는 사업들의 성격에 대해 검토하고, 투자심사 제외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추가 검토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2항에서 제시하는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필요/제외 적정성 검토
-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상 제시된 별표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의 투자심사 필요/제외 적정성 검토

기대효과

- 투자심사 제외사업의 공통적 특징을 정리한 이후 개별 투자심사 제외사업의 법령을 각각 검토하여 투자심사 제외 적정성과 제도 개선안을 제시함

04 조사관련 사업

가. 공무원 교육

◆ 교육 목적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제도, 이력관리 등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여 원활한 예산 집행을 지원하고 타당성 조사 전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

◆ 교육 개최 방식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년 4월 전면 해제되었으며, 공무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비대면-온라인 방식이 아닌 대면 방식의 공무원 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 2021년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을 추진한 바 있음
 - 2021년 공무원 교육 방식 선호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44%가 대면 교육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비대면-온라인 교육 방식의 경우 40%)하였으며,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경우, 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지는 단점이 존재하였음

◆ 교육 내용

- 주 교육 내용은 타당성 조사 방법론,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투자심사 제도이며, 교육이 끝난 후 교육 참석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교육 내용의 이해를 제고함
 - 타당성 조사 부문에선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이력관리 제도를 소개함
 - 투자심사 제도 부문에선 제도의 필요성과 취지, 변경된 제도의 배경과 내용, 제도 변경에 따른 실무 변경 사항과 심사 자료 작성 방법 등을 소개함

◆ 교육 실적

- 공무원 교육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수도권 1회, 비수도권 1회 및 지자체 요청 4회 등 총 6회에 걸쳐 진행하였고, 총 284명이 수강함

◇ 차수별 교육 신청 및 수강인원

| 구분 | 시기 | 교육명 | 수강 인원 |
|----|----------|---------------|-------|
| 1차 | 05/30(월) | 강원 지역 공무원 교육 | 31명 |
| 2차 | 08/11(목) | 인천 지역 공무원 교육 | 21명 |
| 3차 | 09/21(수) | 출자·출연 검토기관 교육 | 39명 |
| 4차 | 10/17(월) | 안동시 공무원 교육 | 15명 |
| 5차 | 10/28(금) | 수도권 공무원 교육 | 89명 |
| 6차 | 11/24(목) | 비수도권 공무원 교육 | 89명 |
| 합계 | | | 284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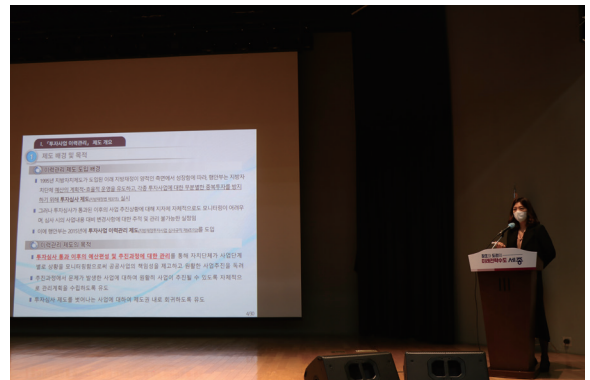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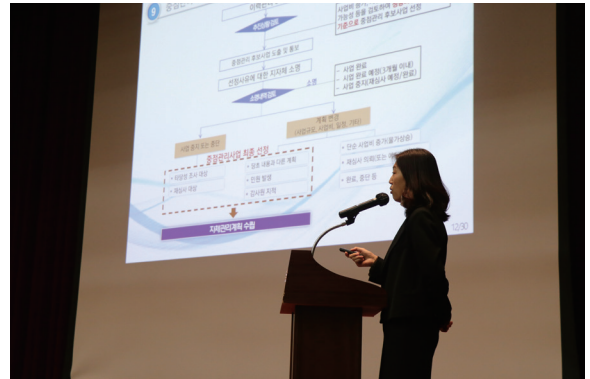
◇ 공무원 교육 시간표 예시(수도권 공무원 교육)

| 교육 내용 | 시간 | | 발표 |
|----------------|--------------------|--------------------|-----------------------|
| 입장 | ~13:10 | | |
| 국민의례 | 13:10~13:15(` 5) | | |
| 인사말 | 13:10~13:15(` 5) | | KRILA 김일재 원장 |
| 환영사 | 13:20~13:25(` 5) | | 인천광역시 천준호 실장 |
| 타당성조사 개요 및 방법론 | 강의 | 13:30~14:30(` 60) | LIMAC 김남주 재정투자조사부장 |
| | 질의응답 | 14:30~14:40(` 10) | |
| 휴식 시간 | 14:40~14:50(` 10) | | |
| 투자심사제도 | 강의 | 14:50~15:50(` 60) | 행정안전부 전제범 재정정책과 팀장 |
| | 질의응답 | 15:50~16:00(` 10) | |
| 휴식 시간 | 16:00~16:10(` 10) | | |
| 이력관리제도 | 강의 | 16:10~17:10(` 60) | LIMAC 함윤주 재정투자평가부장 |
| | 질의응답 | 17:10~17:20(` 10) | |

◇ 공무원 교육 시간표 예시(수도권 공무원 교육)

| 교육 내용 | 시간 | | 발표 |
|----------------|--|--------------------|-----------------------|
| 입장 | ~13:00 | | |
| 국민의례 | 13:05~13:10(` 5) | | |
| 인사말 | 13:10~13:20(` 10) 13:10~13:20(` 10) 13:10~13:20(` 10)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축사 | | | 행정안전부 |
| 환영사 | | | 세종시청 |
| 타당성조사 개요 및 방법론 | 강의 및 질의응답 | 13:20~14:55(` 95) | LIMAC 김남주 재정투자조사부장 |
| 휴식 시간 | 14:55~15:00(` 5) | | |
| 투자심사제도 | 강의 및 질의응답 | 15:00~16:25(` 85) | 행정안전부 전제범 재정정책과 팀장 |
| 휴식 시간 | 16:25~16:30(` 5) | | |
| 이력관리제도 | 강의 및 질의응답 | 16:30~18:00(` 90) | LIMAC 함윤주 재정투자평가부장 |

◇ 공무원 교육 현장 사진



나. 내부역량강화

◆ 내부역량강화 목적

- 국내외 지방재정 부문 및 기타 분야 등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LIMAC 구성원의 연구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유관 기관 관계자 초청 교육을 통해 배경 및 전문 지식을 고도화함으로써 타당성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 주제

- 타당성 조사 수행 및 지방재정과 관련한 이슈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 지방 공공기관의 현황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추진 배경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

◆ 실적

- 2022년 내부역량강화는 총 8회 개최하였으며, 지방재정과 지방공공기관, 문화 및 체육시설의 설문조사 방법, 타당성 조사 지침 개정 사항 등 LIMAC의 역할과 전문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음
- 내부역량강화 프로그램은 COVID-19 거리두기 완화로 대면 방식으로 진행함

◇ 2022년 LIMAC 내부역량강화 실적 요약

| 번호 | 시기 | 발제자 | 주 제 |
|----|----------|-----------------------------|---|
| 1 | 3/28(월) | 서정섭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지방재정영향평가와 가용재원 산정 방법 |
| 2 | 4/18(월) |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 지방공공기관의 이론과 현실 |
| 3 | 5/24(화) | 박기관 상지대학교 교수 | 새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세미나 |
| 4 | 6/20(월) | 박원열 현대리서치 본부장 | 문화체육분야 설문조사시 유의사항 |
| 5 | 7/26(화) | 송지영 LIMAC 연구위원 | 타당성 조사 일반지침 개정사항 |
| 6 | 8/22(월) | 함윤주 LIMAC 재정투자평가부장 | 주거 및 상업부문 타당성 조사 지침 개정사항 |
| 7 | 9/26(월) | 김남주 LIMAC 재정투자조사부장 | 산업 부문 타당성 조사 수행 방법 |
| 8 | 10/24(월) | 김상기 LIMAC 기획총괄부장 | 출자·출연법 SPC 설립 타당성 검토와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 사업과의 차이 |

다. 세미나

◆ 세미나 개최 목적

-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및 타당성 조사 분석 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평가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세미나 주요 주제

- 지방재정투자사업 관련 제도 발전과제 및 타당성 조사 관련 방법론 등 사안별로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학술 세미나를 개최

◆ 개최 형식

- 단독 및 관련 학회(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등)와 공동 개최

◆ 세미나 개최 실적

- 2022년에 총 5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사업 전문기관 세미나,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기관 세미나,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및 한국지방재정학회와의 공동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함

◇ 2021년 LIMAC 구성원의 세미나 실적 요약

| 구분 | 시기 | 내 용 |
|----|---------------------------|--|
| 1 | 2022.4.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세미나(투자심사 분과) - 주제: 지방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방안 개선 연구 |
| 2 | 2022.6.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재정정책학회 공동 하계학술대회(공공사업 경제성 분석(LIMAC 세션)) - 주제: 재정과 정치의 조화-새 정부는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 - (소주제 1) Big-Data를 활용한 증거기반 조사기법 사례 |
| 3 | 2022.8.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지방세학회 공동 하계학술대회(한국부동산원·LIMAC 분과) - 주제: 윤석열정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역량강화 - (소주제 1)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의 의미 - (소주제 2) 도시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 추정 연구 |
| 4 | 2022.9.21. ~2022.9.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기관 세미나 - 주제: SPC 설립 타당성 검토 설명,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사례·쟁점 소개 - (소주제 1) SPC 설립 타당성 검토와 지방재정사업의 차이 - (소주제 2) 「PFV 출자 타당성 검토 매뉴얼」 설명 |
| 5 | 2022.12.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세미나(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 분과) - 주제: 4차혁명시대, 지방재정의 디지털 플랫폼 혁신 - (소주제 1)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방투자사업 - (소주제 2)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분석 방안 |

05

조사지원 사업

가. 자문위원회

- ◆ 자문위원회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조사과제 운영지침」 제16조에 의거한 자문기관임
 - 자문위원회는 1) 조사과제에 관련한 자문 및 평가, 2) 연구과제 및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음
- ◆ 2022년에는 출자·출연 분야 3인의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투자사업에 탁월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 49인의 비상근위원체제로 운영함
- ◆ 2022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총 2차례의 자문위원회를 진행함
 - 제1회 자문위원회는 홍보 및 협업, 역량강화, 이력관리, 청사이전 이후 발전 방향 등의 센터 현안에 대해 논의함
 - 제2회 자문위원회에서는 LIMAC의 성과 및 중기발전계획 등에 대해 주로 논의함
- ◇ 2021년 LIMAC 구성원의 세미나 실적 요약

| 구분 | 일시 | 장소 | 주요 논의 내용 | 참석자 |
|----------------|-------------|--------------|---|--|
| 1차 LIMAC 자문위원회 | 2022.07.01. | 양재 aT센터 창조룸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현황 (2021년 실적 및 2022년 계획) 보고 및 자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인 LIMAC 자문위원 29인 행정안전부 2인 |
| 2차 LIMAC 자문위원회 | 2022.11.30 | 양재 aT센터 세계로룸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현황 (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 보고 및 자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인 LIMAC 자문위원 19인 행정안전부 1인 |

◆ 2022년 상반기 자문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aT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함

◇ 상반기 자문위원회 주요 자문 내용

| 구 분 | | 주요 자문 내용 |
|------|------------------|---|
| 조사사업 |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공약 사업과 타당성 조사 의뢰사업과의 연관성 검토 필요 •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 수준 향상 필요 • 자문 품질 향상을 위해 자문수당 증액 필요 • 모형의 고도화 및 단순화 등을 통하여 사업별 적합한 방법론 적용 및 개발을 위한 도전이 필요함 • 수도권 과밀화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 필요성 강화가 요구됨 • 환경시설과 관련하여, 기능 중심의 사업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다양한 사업에 대한 유연한 평가가 필요함 • 공간데이터 활용 공간 분석의 중요성 강화 필요 • 기존 타당성 분석 모형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 개선 연구 수행 필요 |
| | 투자사업 이력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조사의 재정효율성 효과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사 이후 사업 평가가 요구됨 |
| | 타당성 조사 지침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 이전과 복수 전문기관이 생김 상황에서, LIMAC은 조사사업의 선정 기준 및 지침에 대한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 기타 | 역량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기관 파견 등을 통해 내부 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센터 연구과제 확대 수행의 필요가 있음 |
| | 조직 및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사업의 정통적 역량을 강화하여 종합적 전문기관의 자리를 매김하길 바람 • 센터 재정 안전화 방안으로서 유료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고려 필요 • 인력 유출 방지 방안 필요 • 센터 운영 관련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출연금 확보 방안 가시화 필요 |
| | 원주이전/ 복수기관 설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 기관 등과 공동 워크숍을 통해 합리적 방법론 설정 및 역할 분담 필요 • 지자체 및 전문가들의 접근성 강화, 복수 기관과의 경쟁을 위해 서울 사무소 개설 필요 |

◆ 2022년 하반기 자문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aT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함

◇ 하반기 자문위원회 주요 자문 내용

| 구분 | | 주요 자문 내용 |
|---------------|---------------|---|
| 조사사업 |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C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차원을 구분하여 제시 필요 설문조사 과정에서부터 매뉴얼 마련 등으로 조사과정의 일관성 유지 필요 |
| | 투자사업 이력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력관리나 투자심사 관리, 지방재정분석제도 등이 수기로 입력되고 있는 DB관리나 운영방식 개선 필요 |
| | 타당성 조사 지침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정책에 따른 신규 사업에 지방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새로운 분야에 적합한 지침연구 필요 정책적 분석에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주민의 요구도 등 비계량화 및 정성적 분석에 대한 기준/항목을 매뉴얼이나 지침, 분석 방법으로 제시 필요 |
| |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출연과 관련하여 시도 공투센터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하는지 LIMAC에서 매뉴얼 발간시 참고 필요 |
| 조사관련사업 (학술행사) | 공무원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 차원에서 지방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활성화 필요 확일적인 교육보다는 각 사업부서별 맞춤형 위주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필요 투자심사 의뢰 전 각 지자체 교육 및 컨설팅 필요 |
| | 내부역량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C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연수제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고려 필요 |
| 기타 | 조직 및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C과 중복기관과의 관계 정립 및 역할 분담 등 논의가 필요 LIMAC의 비전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자체연구의 양을 줄이는 대신 인력 보강과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원주 이전 후 직원의 주거지나 근무공간 열악에 따른 사기가 저하가 예상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원 직원들의 복지 개선이 필요 |
| | 원주 이전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주 이전 이후 회의참석의 어려움으로 회의실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 지방재정투자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자인 지자체를 고려한 회의실 마련 필요 |

나.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 ◆ 2022년에는 기존에 '찾아가는 컨설팅'의 설문결과 및 COVID-19 장기화에 대응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방법(찾아오는·찾아가는·온라인)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함
 - TOM(탐)나는 컨설팅의 '탐'의 음은 肫에서 따왔으며 Two-way On and off Meeting의 약자로, 1) 찾아가는, 2) 찾아오는 3) 온라인 총 3가지의 방식 중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추진함
 -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의 심화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투자사업을 지원함
 -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의 사업계획 및 추진 상 고려사항, 타당성 조사 분석 내용과 결과 해석 및 문제점 교육, 투자심사 결과 재심사 및 조건부 사업에 대한 보완 사항 자문,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방식 교육 등
 - 지방투자사업 분석 및 컨설팅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투자사업 지원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강화방안 등
- ◆ 2022년 TOM(탐)나는 컨설팅은 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정기(1~8차) 및 수시 기간 동안 총 106건의 컨설팅을 수행함
- ◆ 정기 외 기간에 진행되는 상시기간에 찾아가는 컨설팅(전북지역, 인천지역, 전북·전주지역, 강원지역)은 20건을 수행함
- ◇ 상반기 자문위원회 주요 자문 내용

| 구분 | 컨설팅 기간 | 수행 건수(건) |
|----|-----------------------------|----------|
| 1차 | • 1월 4째 주(1월 24일~1월 28일) | 5 |
| 2차 | • 3월 2째 주(3월 7일~3월 11일) | 6 |
| 3차 | • 5월 1째 주(5월 2일~5월 6일) | 1 |
| 4차 | • 6월 2째 주(6월 13일~6월 17일) | 2 |
| 5차 | • 7월 2째 주(7월 11일~7월 15일) | 7 |
| 6차 | • 8월 1째 주(8월 1일~8월 5일) | 2 |
| 7차 | • 10월 1째 주(10월 3일~10월 7일) | 2 |
| 8차 | • 11월 3째 주(10월 14일~11월 18일) | 12 |
| 수시 | • 찾아가는 컨설팅(전주, 인천, 전북, 강원) | 20 |
| | • 1~12월 상시 | 49 |
| 합계 | - | 106건 |

다.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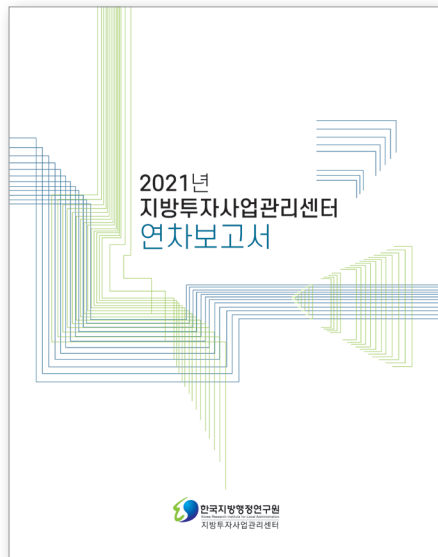
◆ 2021년 연차보고서 발간

○ 2020년에 수행한 LIMAC 5주년 백서 발간(2015-2019년) 이후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

◆ 지속적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 인터넷 홈페이지의 리빌딩 및 모바일 버전 홈페이지 제작 후 지속적 관리, LIMAC 주요 업무와 행사 등 홍보 수행

◇ 2021년 연차보고서



◇ 모바일 홈페이지



◇ 2021년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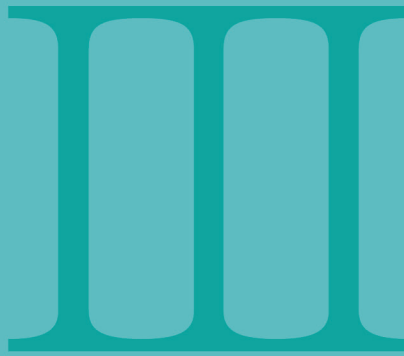


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LIMAC

2022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차보고서

PART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성과

-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홍보 효과
 - 이력관리 백서 및 경평 요약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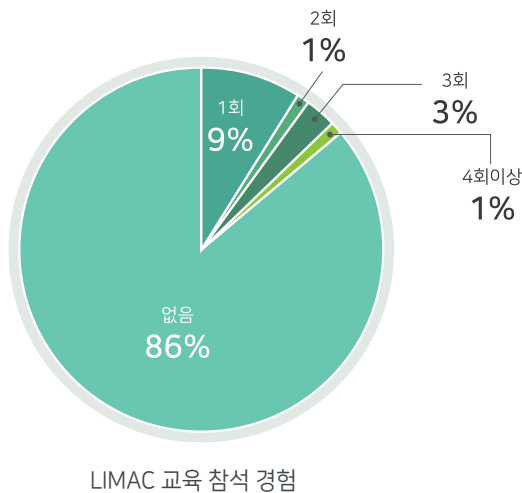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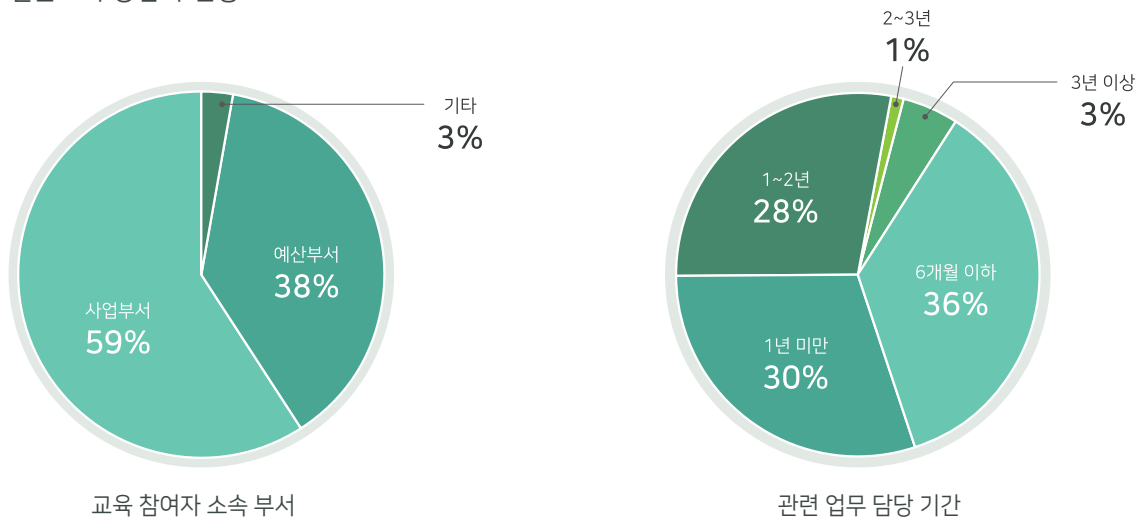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홍보 효과

가. 2022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1)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 ◆ 전체 설문 응답자 부서 현황은 사업부서 59%, 예산부서 38%, 기타(공투센터 등) 3%로 나타남
- ◆ 관련 업무의 담당 기간은 6개월 이하 36%, 1년 미만 30%, 1~2년 28%, 2~3년 1%, 3년 이상 6%로 나타남
- ◆ LIMAC 교육의 참석 경험의 응답 결과, 참석 경험이 전혀 없는 인원이 86%로 수강자 대부분이 교육을 처음 수강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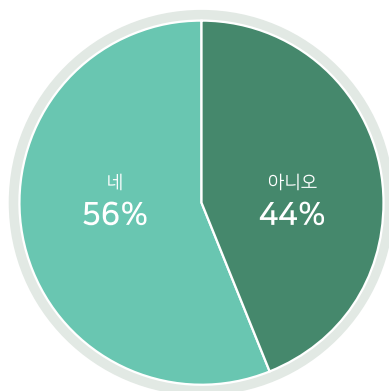
◇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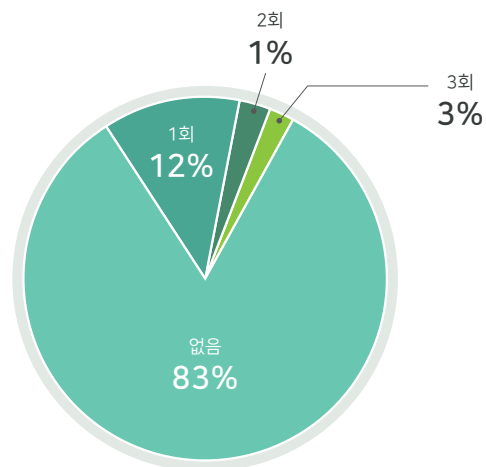
2)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관련 사항

- ◆ 응답자 56%는 교육 참석 이전에도 LIMAC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4%는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함
- ◆ 응답자의 대부분(83%)이 LIMAC 타당성 조사 의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응답자 중 39%는 LIMAC 홈페이지에 방문한 경험이 있지만, 61%는 방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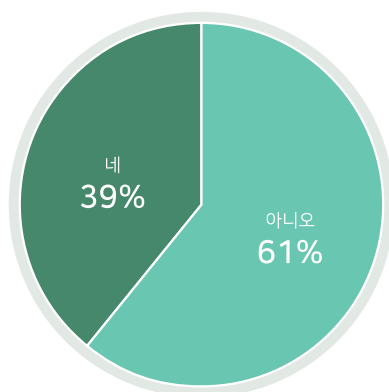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관련 사항



LIMAC 인지 유무



LIMAC 조사 의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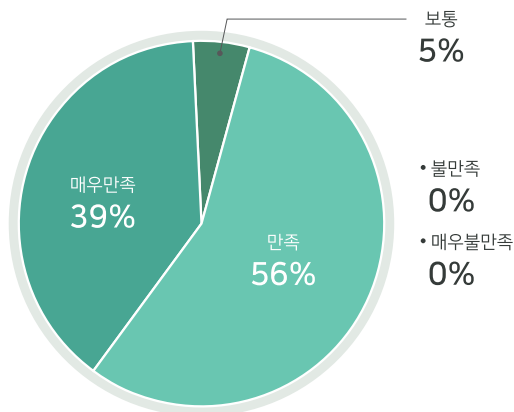
LIMAC 홈페이지 방문 유무

3) 공무원 교육 방식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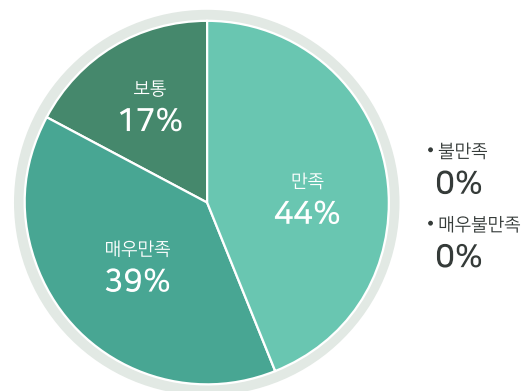
- ◆ 공무원 교육 방식 선호도 조사 결과, 응답자 중 16%가 온라인 교육 방식을 선호한 반면, 84%가 집합교육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함
 - 온라인 교육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에는 접근성 제고, 이동시간 절약과 반복 학습이 가능한 부분이 언급되었음
 - 집합 교육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온전히 강의에 집중할 수 있고 질의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이해도와 강의 전달력이 온라인 교육 대비 더욱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교육장 접근 편의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34%가 매우 만족, 31%가 만족, 23%는 보통, 7%는 불만족, 5%는 매우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한 내용으로 교육장까지의 거리가 상당했으며, 식사 장소를 찾기 어려웠던 경험을 기술하였음

4) 공무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 ◆ 강의 내용과 강의 참여 목적의 적합도를 물어보는 교육 내용의 적정성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9%가 매우 만족, 56%가 만족, 5%가 보통으로 응답함
- ◆ 집합 교육 시간의 적절성 조사 결과, 39%가 매우 만족, 44%가 만족, 17%가 보통으로 응답함
-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관련 사항



교육 내용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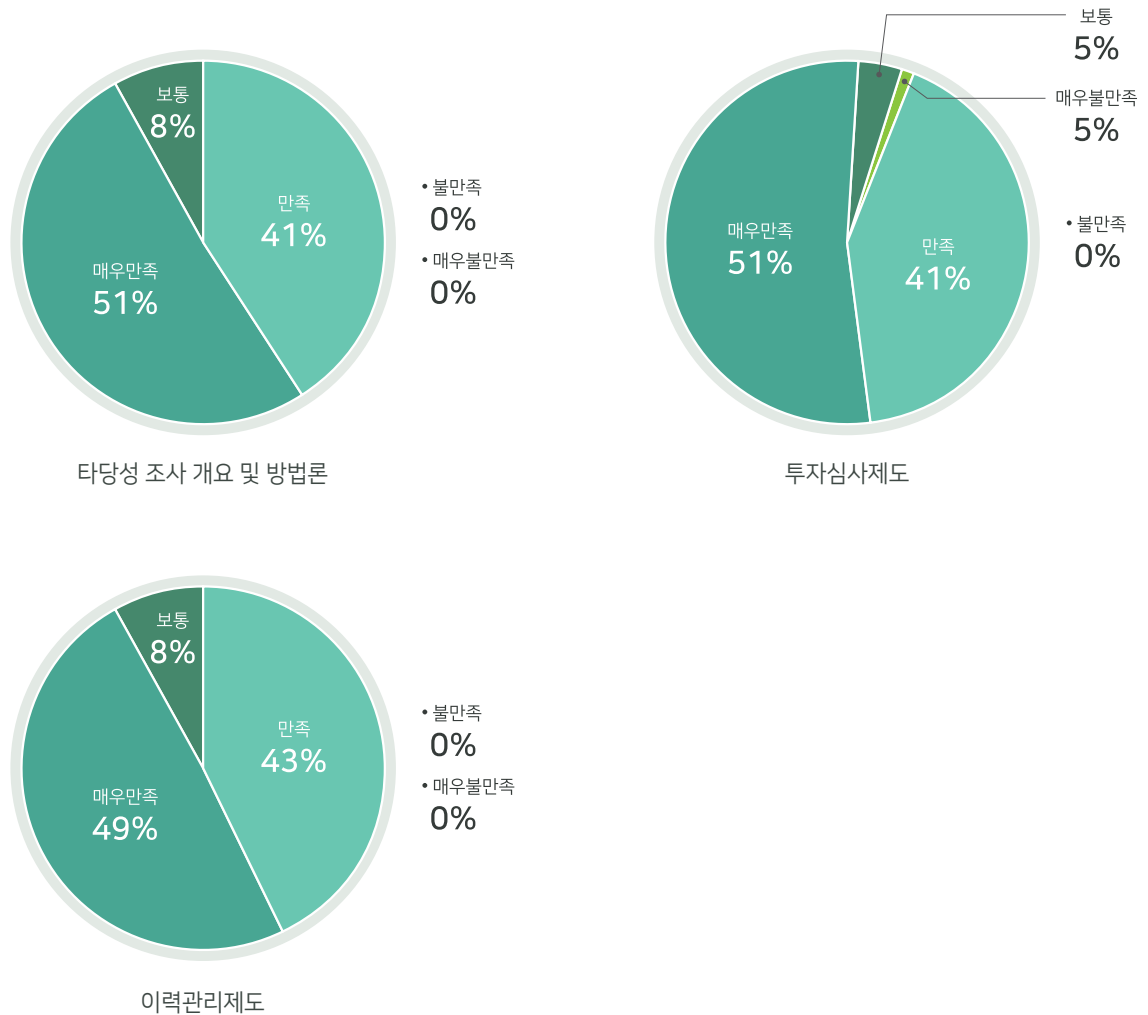
교육 시간의 적절 여부

5)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

◆ 교육 내용의 활용성

- 타당성 조사 개요 및 방법론이 담당 업무에 도움(매우 만족, 만족)이 되었다고 응답한 인원은 92%로 조사됨
- 투자심사제도가 담당 업무에 도움(매우 만족, 만족)이 되었다고 응답한 인원은 95%로 조사됨
- 이력관리제도가 담당 업무에 도움(매우 만족, 만족)이 되었다고 응답한 인원은 92%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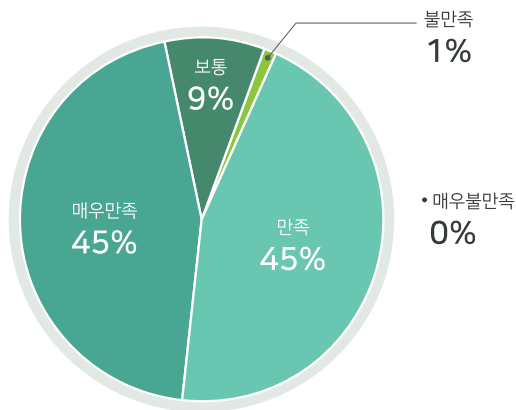
◇ 담당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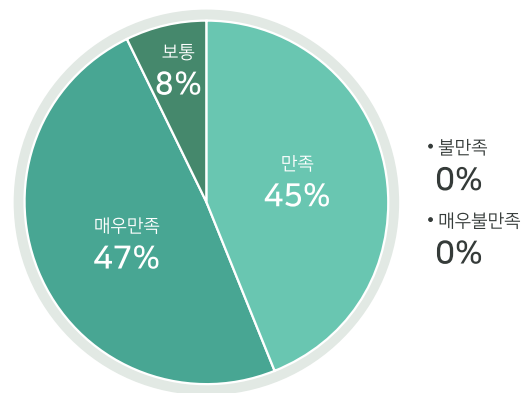
◆ 과목별 교육 난이도

- 타당성 조사 개요 및 방법론의 난이도는 응답자 45%가 매우 만족, 45%가 만족, 9%가 보통, 1%가 불만족한 것으로 응답함
- 투자심사제도의 난이도는 응답자 44%가 매우 만족, 49%가 만족, 7%가 보통으로 응답함
- 이력관리제도의 난이도는 응답자 47%가 매우 만족, 45%가 만족, 8%가 보통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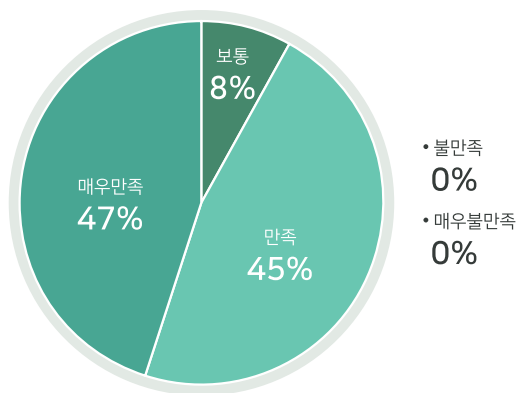
◇ 과목별 교육 난이도



타당성 조사 개요 및 방법론



투자심사제도



이력관리제도

◆ 교육의 좋은 점과 개선사항

◇ 교육의 장점과 개선사항

장 점

- 교육 시간이 적절함
- 행정안전부 담당자의 핵심 위주 설명
- 수준 높은 교육 청취에 따른 만족도 상승
- 이해하기 쉬운 강의 내용과 전달력
- 전체적인 흐름과 중점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기 쉬웠음
- 제도 개선에 대해 미리 알려준 점이 좋았음
- 교육 내용 및 시설 등이 만족스러움
- 투자심사 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점이 좋았음
- 투자심사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됨

개선 사항

- 투자심사제도 교육 횟수 및 시간 연장 요청
- 투자심사제도의 보완 설명 및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 추가 요청
- 케이스 스터디 내용이 많아지길 요청함
- 지자체별 컨설팅 희망
- 예산부서는 특히 10~11월에 수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해주길 바람
- 교재 외 자료 또한 미리 배포해주길 바람
- 교육 장소의 접근성이 낮으며, 권역/광역 단위 교육 요청
- 경험에 기초하여 특정 사업을 중심으로 교육해주길 바람

나. 2022년 TOM(탐)나는 컨설팅

1) TOM(탐)나는 컨설팅 개요 및 수행 현황

- ◆ COVID-19 장기화에 대응하면서 컨설팅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행된 “TOM(탐)나는 컨설팅”을 21년에 이어 22년에도 추진함
- ◆ 2022년 TOM(탐)나는 컨설팅은 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정기(1~8차) 및 수시 기간 동안 총 106건의 컨설팅을 수행함
- ◇ 2022년 차수별 컨설팅 수행 실적

| 구분 | 컨설팅 기간 | 수행 건수(건) |
|----|-----------------------------|----------|
| 1차 | • 1월 4째 주(1월 24일~1월 28일) | 5 |
| 2차 | • 3월 2째 주(3월 7일~3월 11일) | 6 |
| 3차 | • 5월 1째 주(5월 2일~5월 6일) | 1 |
| 4차 | • 6월 2째 주(6월 13일~6월 17일) | 2 |
| 5차 | • 7월 2째 주(7월 11일~7월 15일) | 7 |
| 6차 | • 8월 1째 주(8월 1일~8월 5일) | 2 |
| 7차 | • 10월 1째 주(10월 3일~10월 7일) | 2 |
| 8차 | • 11월 3째 주(10월 14일~11월 18일) | 12 |
| 수시 | • 찾아가는 컨설팅(전주, 인천, 전북, 강원) | 20 |
| | • 1~12월 상시 | 49 |
| 합계 | - | 106건 |

◇ 2022년 컨설팅 리스트

| 순번 | 차수 | 시도 | 시군구 | 사업명 | 컨설팅유형 | 문의유형 |
|----|----|----|-----|------------------------------|-------|-------|
| 1 | 기타 | 충북 | 청주 |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2 | 기타 | 강원 | 본청 | 강원도기록원 건립사업 | 찾아오는 | 사업계획 |
| 3 | 기타 | 서울 | 강북 |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4 | 기타 | 전북 | 본청 |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사업 | 찾아오는 | 사업계획 |
| 5 | 1차 | 부산 | 본청 | 부산남항 암남동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 온라인 | 타당성조사 |
| 6 | 1차 | 충북 | 청주 | 초정클러스터 관광육성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7 | 1차 | 경남 | 창원 | 내서도서관 재건축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8 | 1차 | 대전 | 중구 |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9 | 1차 | 경기 | 안산 |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찾아오는 | 사업계획 |
| 10 | 기타 | 충북 | 충주 |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11 | 기타 | 충북 | 충주 |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12 | 기타 | 강원 | 강릉 | 강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 찾아오는 | 사업계획 |
| 13 | 기타 | 충북 | 청주 | 초정클러스터 관광육성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14 | 2차 | 경북 | 경주 |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15 | 2차 | 경북 | 문경 |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16 | 2차 | 경남 | 양산 | 황산역,황산잔도 관광개발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17 | 2차 | 대전 | 중구 |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18 | 2차 | 경기 | 용인 | 용인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19 | 2차 | 광주 | 본청 |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20 | 기타 | 충북 | 제천 |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사업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21 | 기타 | 대구 | 본청 | 반려동물테마파크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22 | 기타 | 충북 | 증평 | 증평군 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23 | 기타 | 경기 | 과천 |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신설사업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24 | 기타 | 경남 | 양산 | 양산 산업융합연구단지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25 | 기타 | 경북 | 김천 | 제2스포츠타운 조성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26 | 기타 | 강원 | 강릉 | 강릉시 23사단 사격장 이전 사업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27 | 기타 | 충북 | 청주 |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28 | 기타 | 경북 | 예천 | 예천군립 박서보미술관 건립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29 | 기타 | 전북 | 전주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지원 | 찾아가는 | 투자심사 |
| 30 | 기타 | 전북 | 전주 |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 | 찾아가는 | 타당성조사 |

| 순번 | 차수 | 시도 | 시군구 | 사업명 | 컨설팅유형 | 문의유형 |
|----|----|----|-----|------------------------|-------|-------|
| 31 | 기타 | 전북 | 전주 |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사업 | 찾아가는 | 투자심사 |
| 32 | 기타 | 전북 | 군산 | 새만금 스마트수산 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 | 찾아가는 | 투자심사 |
| 33 | 기타 | 전북 | 남원 |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찾아가는 | 투자심사 |
| 34 | 기타 | 전북 | 김제 |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찾아가는 | 타당성조사 |
| 35 | 기타 | 전북 | 완주 |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 찾아가는 | 투자심사 |
| 36 | 3차 | 경기 | 군포 |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사업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37 | 기타 | 경북 | 예천 | 예천군립 박사보미술관 건립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38 | 4차 | 서울 | 본청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39 | 4차 | 경북 | 김천 | 제2스포츠타운 조성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40 | 기타 | 서울 | 노원 | 중계구민체육센터 신축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41 | 기타 | 경북 | 예천 | 양궁훈련센터 건립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42 | 기타 | 충북 | 충주 | 충주 예술의전당 건립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43 | 기타 | 경기 | 과천 | 과천시식정보타운역 신설사업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44 | 기타 | 충남 | 본청 | 대전항 북방파제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45 | 5차 | 강원 | 양양 |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 사업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46 | 5차 | 서울 | 노원 | 공릉동 청년문화복합시설 신축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47 | 5차 | 서울 | 노원 |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48 | 5차 | 충북 | 단양 |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49 | 5차 | 부산 | 본청 | 부산남항 암남동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50 | 5차 | 인천 | 본청 | 인천광역시 신청사 건립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51 | 5차 | 충남 | 당진 | 당진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52 | 기타 | 충남 | 본청 | 서산의료원 신관증축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53 | 6차 | 충남 | 본청 |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54 | 6차 | 서울 | 노원 |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55 | 기타 | 경북 | 김천 | 제2스포츠타운 조성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56 | 기타 | 전남 | 본청 |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57 | 기타 | 인천 | 본청 | 인천광역시 신청사 건립사업 | 찾아가는 | 투자심사 |
| 58 | 기타 | 인천 | 본청 | 119생존수영 체험장 신설사업 | 찾아가는 | 투자심사 |
| 59 | 기타 | 인천 | 본청 | 인천기록원 설립 사업 | 찾아가는 | 타당성조사 |
| 60 | 기타 | 인천 | 본청 |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구축사업 | 찾아가는 | 투자심사 |

| 순번 | 차수 | 시도 | 시군구 | 사업명 | 컨설팅유형 | 문의유형 |
|----|----|----|-----|-----------------------------|-------|-------|
| 61 | 기타 | 경북 | 상주 |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62 | 기타 | 경북 | 김천 | 제2스포츠타운조성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63 | 기타 | 충북 | 충주 | 충주 예술의전당 건립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64 | 기타 | 강원 | 태백 | 태백 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65 | 기타 | 경기 | 남양주 | 양정역세권,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사업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66 | 기타 | 강원 | 강릉 | 강릉 허브거점단지 조성사업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67 | 8차 | 경기 | 본청 |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 찾아오는 | 사업계획 |
| 68 | 기타 | 전북 | 본청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 찾아가는 | 사업추진 |
| 69 | 기타 | 전북 | 완주 |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 찾아가는 | 투자심사 |
| 70 | 기타 | 전북 | 장수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 찾아가는 | 사업계획 |
| 71 | 기타 | 전북 | 전주 |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 사업 | 찾아가는 | 투자심사 |
| 72 | 기타 | 전북 | 전주 | 음식관광창조타운조성 사업 | 찾아가는 | 투자심사 |
| 73 | 기타 | 전남 | 본청 | 소안~구도간 연도교 개설공사 | 온라인 | 타당성조사 |
| 74 | 기타 | 전남 | 본청 | 소안~구도간 연도교 개설공사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75 | 기타 | 경기 | 광명 | 장애인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 찾아오는 | 사업계획 |
| 76 | 7차 | 경기 | 시 |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77 | 기타 | 대구 | 본청 |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78 | 7차 | 경기 | 본청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청사 이전 사업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79 | 8차 | 전남 | 장흥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80 | 8차 | 경북 | 상주 | 상주시 신청사 건립사업 | 찾아오는 | 사업계획 |
| 81 | 8차 | 대구 | 본청 | 대구의료원 외래진료센터 구축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82 | 8차 | 전남 | 보성 | 보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83 | 8차 | 경기 | 안산 |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84 | 8차 | 경기 | 파주 | 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 찾아오는 | 사업계획 |
| 85 | 8차 | 경기 | 파주 |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86 | 8차 | 서울 | 강동 | 강동구 신청사 건립사업 | 찾아오는 | 사업계획 |
| 87 | 8차 | 경기 | 용인 |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88 | 8차 | 경기 | 평택 | 고덕중앙도서관 건립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89 | 기타 | 충남 | 서산 | 남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90 | 8차 | 부산 | 본청 |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순번 | 차수 | 시도 | 시군구 | 사업명 | 컨설팅유형 | 문의유형 |
|-----|----|----|-----|---|-------|-------|
| 91 | 기타 | 서울 | 노원 |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92 | 기타 | 제주 | 제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남조봉공원 조성사업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93 | 기타 | 제주 | 제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94 | 기타 | 제주 | 제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서부공원 조성사업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95 | 기타 | 경남 | 거창 | 공공기관 이전 부지조성사업 | 찾아오는 | 사업계획 |
| 96 | 기타 | 경기 | 군포 | 금정역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 | 찾아오는 | 사업계획 |
| 97 | 기타 | 강원 | 태백 |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사업 | 찾아가는 | 투자심사 |
| 98 | 기타 | 강원 | 태백 | 폐광지역 산림클러스터 조성사업 | 찾아가는 | 투자심사 |
| 99 | 기타 | 강원 | 강릉 |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 찾아가는 | 투자심사 |
| 100 | 기타 | 강원 | 철원 | 군도1호선(신철원~산안고개)도로확포장 | 찾아가는 | 투자심사 |
| 101 | 기타 | 전북 | 남원 | 2023 FAI 월드컵드래이싱 챔피언십 및 남원 UAM.드록 국제엑스포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102 | 기타 | 경기 | 파주 | 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103 | 기타 | 충남 | 본청 | 충남스포츠크센터 건립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104 | 기타 | 경기 | 안산 |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 찾아오는 | 타당성조사 |
| 105 | 기타 | 강원 | 강릉 |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 찾아오는 | 투자심사 |
| 106 | 기타 | 경기 | 오산 | 오산 공영버스터미널 건립사업 | 찾아오는 | 사업계획 |

2) 지방자치단체별 컨설팅 신청 현황

◆ 지자체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17.9%), 전북(13.2%), 강원 및 충북(10.4%)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 2개 시·도(울산, 세종)에서는 컨설팅을 1건도 신청하지 않아 23년에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컨설팅 지방자치단체별 신청 현황

| 시·도 | | 시군구 등 | 컨설팅 건수(%) | |
|-----|----|--|-----------|-------|
| 1 | 서울 | 강동(1), 강북(1), 노원(5), 본청(1) | 8 | 7.5% |
| 2 | 부산 | 본청(3) | 3 | 2.8% |
| 3 | 대구 | 본청(3) | 3 | 2.8% |
| 4 | 인천 | 본청(5) | 5 | 4.7% |
| 5 | 광주 | 본청(1) | 1 | 0.9% |
| 6 | 대전 | 중구(2) | 2 | 1.9% |
| 7 | 울산 | - | 0 | 0.0% |
| 8 | 세종 | - | 0 | 0.0% |
| 9 | 경기 | 과천(2), 광명(1), 군포(2), 남양주(1), 본청(2), 시흥(1), 안산(3), 오산(1), 용인(2), 파주(3), 평택(1) | 19 | 17.9% |
| 10 | 강원 | 강릉(5), 본청(1), 양양(1), 철원(1), 태백(3), | 11 | 10.4% |
| 11 | 충북 | 단양(1), 제천(1), 증평(1), 청주(4), 충주(4) | 11 | 10.4% |
| 12 | 충남 | 당진(1), 본청(4), 서산(1) | 6 | 5.7% |
| 13 | 전북 | 군산(1), 김제(1), 남원(2), 본청(2), 완주(2), 장수(1), 전주(5) | 14 | 13.2% |
| 14 | 전남 | 보성(1), 본청(3), 장흥(1) | 5 | 4.7% |
| 15 | 경북 | 경주(1), 김천(4), 문경(1), 상주(2), 예천(3) | 11 | 10.4% |
| 16 | 경남 | 거창(1), 양산(2), 창원(1) | 4 | 3.8% |
| 17 | 제주 | 제주(3) | 3 | 2.8% |
| 합계 | | | 106 | 100% |

◇ 컨설팅 지방자치단체별 신청 현황

| 구분 | 수행 건수(건) |
|-----------------|----------|
| 찾아가는(LIMAC→지자체) | 20 |
| 찾아오는(지자체→LIMAC) | 84 |
| 온라인 | 2 |
| 합계 | 106 |

- ◆ 2022년 정기 8차 개최에 걸친 컨설팅 수행 계획(차수별 5건 이내, 총 40건) 대비 수행률은 265%를 달성함
 - 정기 차수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진행된 '수시' 컨설팅은 전체 컨설팅 수행건수 중 65.1% (69건)를 차지함
 - "찾아가는 컨설팅"은 전주, 인천, 전북, 강원지역에서 수행되었으며, 총 20건의 컨설팅을 수행함
 - 지자체에서는 중앙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의뢰시기 전에 컨설팅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동일한 사업으로 연내 2번 이상 컨설팅 수행한 사업은 13건에 달함
- ◇ 컨설팅 진행 현장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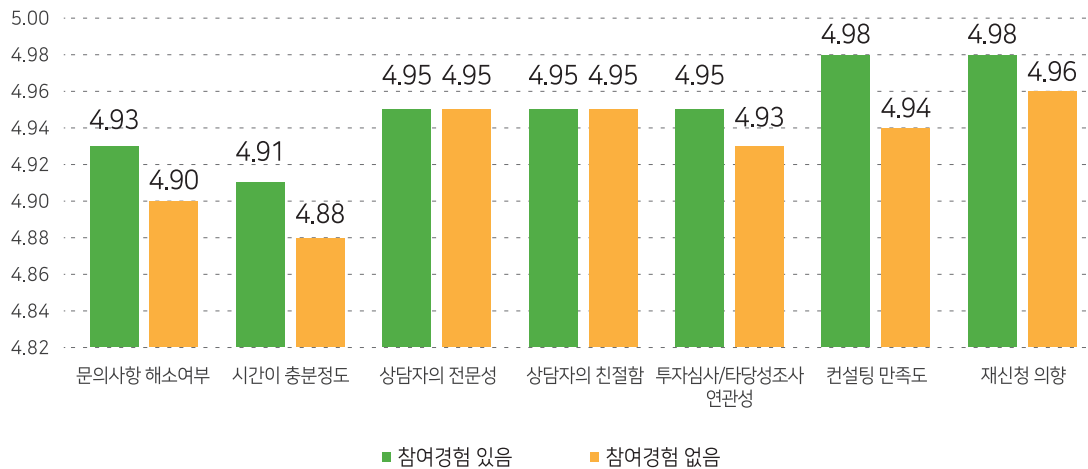
◇ 컨설팅 진행 현장 사진



3) 지방자치단체별 컨설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 TOM(탐)나는 컨설팅에는 5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06건의 사업에 대해 사전에 컨설팅을 신청, 이 중 154명의 참석자가 설문조사에 응답함
 - 컨설팅 내용에 대한 질문은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척도 방식과 컨설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서술식으로 문의
 - 기존 LIMAC의 TOM(탐)나는 컨설팅에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8.6%(44명)에 불과하며 처음으로 LIMAC의 컨설팅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70.1%(108명)를 차지함
 - 이러한 설문 응답 결과를 볼 때, 컨설팅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기타의견사항에서도 많은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 ◇ 컨설팅 만족도 평균 점수

항목별 점수(5점 척도)



| 문항 (5점 만점) | 전체 (154명) | LIMAC 컨설팅 참여 경험 | |
|--|-----------|-----------------|----------|
| | | 있음 (17명) | 없음 (60명) |
| (1) 컨설팅을 통해 문의 사항이 해소되었다 | 4.91 | 4.93 | 4.90 |
| (2) 컨설팅 시간은 충분하였다 | 4.89 | 4.91 | 4.88 |
| (3) 컨설팅 상담자는 충분한 전문성이 있었다 | 4.95 | 4.95 | 4.95 |
| (4) 컨설팅 상담자는 친절하였다 | 4.95 | 4.95 | 4.95 |
| (5) 컨설팅 프로그램은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 4.94 | 4.95 | 4.93 |
| (6) 컨설팅에 대해 만족한다 | 4.95 | 4.98 | 4.94 |
| (7) 향후 TOM(탐)나는 컨설팅을 다시 신청할 의향이 있다 | 4.97 | 4.98 | 4.96 |

◆ 주요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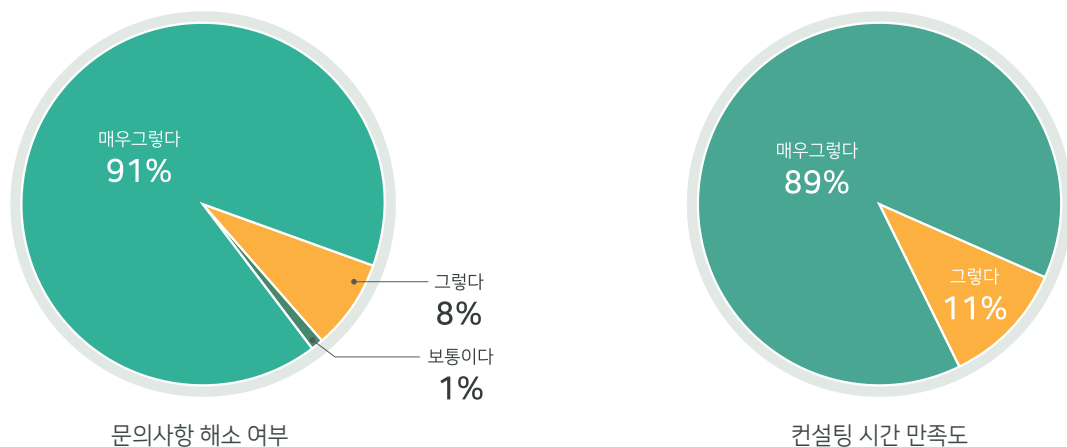
○ 문의 사항의 해소에 대한 응답 결과

- 전체 응답자 중 91.6%가 문의 사항이 '매우 해소'되었다고 응답, 이어 '해소되었다'에 7.8%가 응답하여 TOM(탐)나는 컨설팅이 지방자치단체의 갈등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됨

○ 컨설팅 시간에 대한 응답 결과

- 컨설팅 시간은 60~90분 정도로, 전체 응답자 중 89%가 '매우 그렇다', 1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전체 100%가 충분하다고 응답함

◇ 컨설팅 만족도 평균 점수



○ 컨설팅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응답 결과

- 컨설팅 진행 시간은 의뢰 사업당 배정시간이 60~90분 내외이나, 사전 공문 접수방식을 통해 지자체의 의뢰 사업을 검토함에 따라 심도 있는 컨설팅이 가능하게 됨
- 이러한 진행방식에 따라 컨설팅에 참여하여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100%(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 포함)가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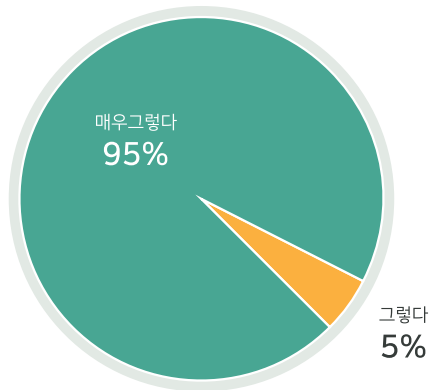
○ 컨설팅 상담자의 친절성에 대한 응답 결과

- 전체 응답자 중 100%는(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 컨설팅 상담자는 친절하였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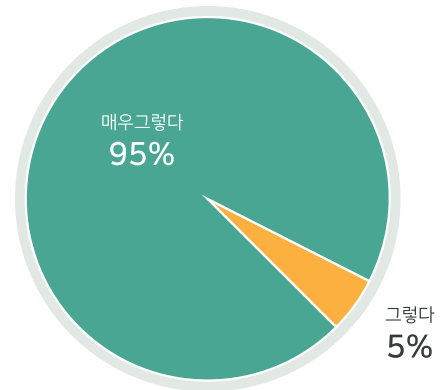
○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와 관련된 교육 내용

- 전체 응답자 중 100%(매우 그렇다+그렇다)가 컨설팅 프로그램은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와 관련된 교육 내용에 충실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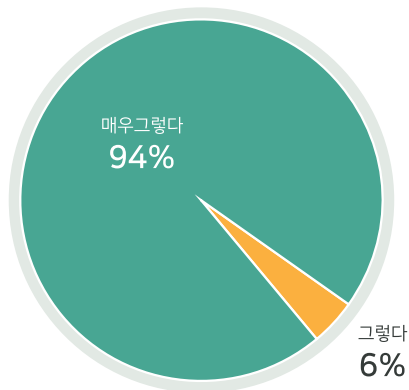
◇ 컨설팅 상담자 전문성 및 친절도, 컨설팅 교육내용 충실도



컨설팅 상담자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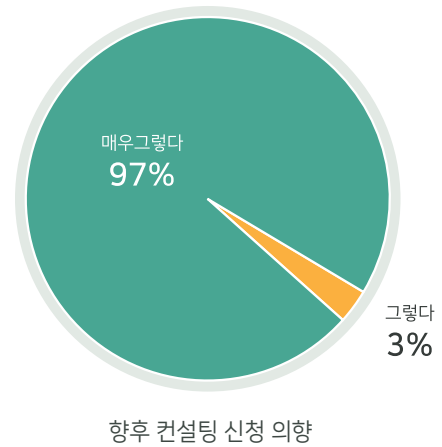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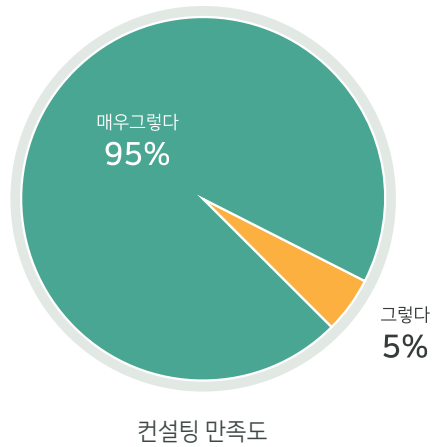
컨설팅 상담자 친절도



교육내용 충실도

- TOM(탐)나는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응답 결과
 - 전체 응답자 중 95%가 매우 만족하였으며, '그렇다'라고 응답한 5%를 포함하여 응답자 100%가 컨설팅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함
- 향후 찾아오는 컨설팅 신청 의향
 - 전체 응답자 중 100%가 향후 컨설팅을 다시 신청할 의향이 있다(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고 응답함
 - 따라서 향후에도 TOM(탐)나는 컨설팅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컨설팅 만족도 및 향후 컨설팅 신청 의향



○ 만족도 설문 조사 기타 의견 관련

- 컨설팅 시기와 횟수 증가 또는 수시로 컨설팅 진행 등 컨설팅 확대를 희망하는 의견을 제시함
- 컨설팅 장소와 관련하여 서울 회의실(스마트워크센터)에 만족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연구원 홈페이지 내에서 컨설팅 신청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투자심사 관련 실무 교육프로그램(사이버 교육 등)이 추가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지속해서 컨설팅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

02

이력관리 백서 및 경평 요약

가.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개요

◆ 투자사업 이력관리 추진배경 및 목적

- 투자심사 통과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도 모니터링이 어렵고, 심사 시의 사업내용 대비 변경사항에 대한 추적 및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었음
- 이에 투자심사 이후의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공공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2015년 투자사업 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함
 - 사업계획의 변경·중단·지연으로 인한 재정손실, 지방재정법령 위배 등의 문제를 관리함

◆ 투자사업 이력관리 대상사업

- 2022년 이력관리는 2013~2021년 중앙투자심사 통과사업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자체투자심사 통과사업을 대상으로 함

◆ 주요 절차

- [1단계] DB구축 → [2단계] 사업검토 → [3단계] 사업관리 단계를 거쳐 추진함
 - 1단계 : 행정안전부 및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이하 LIMAC)는 제출된 사업정보를 검토한 후 해당연도의 이력관리 대상사업 및 관련 핵심정보를 최종 확정함
 - 2단계 : 사업비 규모와 총사업비 증감 비율 및 일정지연 정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에 따른 재심사 대상 가능성 여부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해서 중점관리 후보사업을 선정함
 - 3단계 :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 및 행정안전부 및 LIMAC은 이를 검토하며, 또한 차년도에 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함

나. 2022년 이력관리제도 수행 현황

◆ 2022년 이력관리 대상 : 1,645건

- 2022년 이력관리 대상사업은 2021년 신규로 투자심사를 통과한 준비단계 사업 297건과 2013~2020년에 통과한 추진단계 사업 건으로 총 1,348건임
- 이력관리 대상사업 중 204건은 2021년 말 기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40건은 계획 변경, 국비 미확보, 소송 등으로 인해 재심사를 받거나 사업 추진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것으로 파악됨

◇ 이력관리 대상 사업 건수

(건)

| 구분 | 합계 | 진행중 | 완료 | 취소·중단 |
|------------------------|--------------|--------------|------------|-----------|
| 2021년 신규 통과 사업 (준비단계) | 297 | 291 | 1 | 5 |
| 2013~2020 통과 사업 (추진단계) | 1,348 | 1,104 | 204 | 40 |
| 합계 | 1,645 | 1,395 | 205 | 45 |

◆ 2022년 중점관리사업 선정 및 자체관리계획 수립 검토 : 21건

- 2022년 이력관리 대상사업 중 추진단계 사업에서 취소·중단된 사업을 제외한 1,600건을 대상으로 사업비 변동, 사업내용 변경, 사업 중단 및 지연 여부, 사업기간 변경, 감사원 지적사항, 사업관련 민원/소송/분쟁 여부, 투자심사 조건 이행 여부 등으로 검토한 결과 중점관리후보사업으로 총 199건을 선정함
- 이 중 지방자치단체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중점관리사업으로 최종 21건을 선정하고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함

◇ 이력관리 대상 및 진행 비교

| 구분 | 2021년 이력관리 | 2022년 이력관리 |
|-------------|---|---|
| 투자사업 심사 기간 | 2013~2020년(8년) | 2013~2021년(9년) |
| 투자심사 구분 | 투자심사가 완료된 모든 사업 | 투자심사가 완료된 모든 사업 |
| 사업비 | - 중앙투자심사 : 모든 사업 대상 - 자체심사 : 500억 원 이상 사업 대상 | - 중앙투자심사 : 모든 사업 대상 - 자체심사 : 500억 원 이상 사업 대상 |
| 사업건수 | 1,602건 | 1,600건 |
| 중점관리사업 선정 수 | 44건 | 21건 |
| 자료구축 | 자치단체가 핵심정보 직접 입력 (별도 DB 시스템 구축) | 자치단체가 핵심정보 직접 입력 (별도 DB 시스템 구축) |
| 자가진단 기준 | 9개 항목 13개 세부기준 | 9개 항목 13개 세부기준 |

다. 2022년 이력관리제도 개선사항

◆ 투자사업 이력관리 수행 체계화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2020.12.29.)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절차 및 세부기준 수립
- 이력관리 업무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업무내용과 수행주체를 체계적으로 제시
- 정보입력 관련내용 수정을 통해 2018년부터 수행 중인 LIMAC의 DB 구축 절차와 일치시킴

◆ 투자사업 이력관리 DB 시스템 개선

-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투자사업 정보관리를 위한 온라인 기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함
 - 온라인 기반 DB 관리시스템 개발 추진 : 2단계 심사 추적 관리 시스템 고도화



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LIMAC

2022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차보고서

PART

IV

부 록

- 기관 주요연혁
 -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일정
 - 주요행사 (2022년 기준)
-

01

기관 주요연혁

2014

- 2014. 12 「지방재정법(‘14. 11. 29.시행)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
- 2014.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설립
- 2014. 12 이상용 소장 취임

2015

- 2015. 01 타당성 조사 수행
- 2015. 12 이상용 소장 이임

2016

- 2016. 01 임성일 소장 취임
- 2016. 03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 2016. 04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
- 2016. 11 임성일 소장 이임
- 2016. 12 이효 소장 취임

2018

- 2018. 04 이효 소장 이임
- 2018. 04 이삼주 소장 취임
- 2018. 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현판식 (양재 외교센터)
- 2018. 12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재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8호)

2019

2019.07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12)

2019.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서초동 파크빌딩 이전

2020

2020.05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교육부 고시 제2020-228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1호)

2020.06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7호)

2020.10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재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1호)

2021

2021.06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 재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1호)

2021.11 조기현 소장 취임

2021.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원주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로 이전

2022

2022.04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문기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504호)

2022.11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현판식 및 강원 원주 이전1주년 기념식

02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일정

타당성 조사 및 중앙(시·도) 투자심사 일정

| 일정 | 타당성 조사 | | 중앙(시·도) 투자심사 | |
|----|--------|--------|------------------|-----------|
| | 시군구→시도 | 시도→행안부 | 의뢰 | 심사 |
| 1차 | 1.15. | 1.31. | 중앙 1. 1. | ~ 2월말 |
| | | | 시도 전년도 12.15. | |
| 2차 | 4.15. | 4.30. | 중앙 3.31. | ~ 5. 31. |
| | | | 시도 3.15. | |
| 3차 | 7.15. | 7.31. | 중앙 6.15. | ~ 8. 15. |
| | | | 시도 5.31. | |
| 4차 | 9.30. | 10.15. | 중앙 8.25. | ~ 10. 25. |
| | | | 시도 8.10. | |

타당성 조사 의뢰 및 수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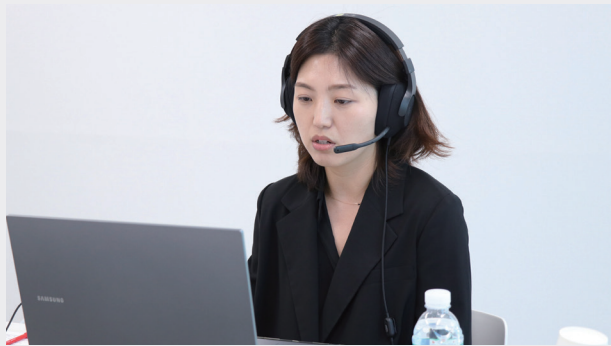
03

주요행사 (2022년 기준)

01 LIMAC 내부역량강화 세미나 (2022년)



공무원 교육
(2022년) 02



2022년 비대면 온라인 공무원 교육 현장



2022년 대면 공무원 교육 현장

학술세미나
(2022년)
03



컨설팅
(2022년)
04





타당성 조사
사업설명회 개최

05

2022년
한국부동산원
업무협약

06



07
2022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자문위원회 개최



08
LIMAC 현판식

2022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차보고서

발행처 |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9(반곡동)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6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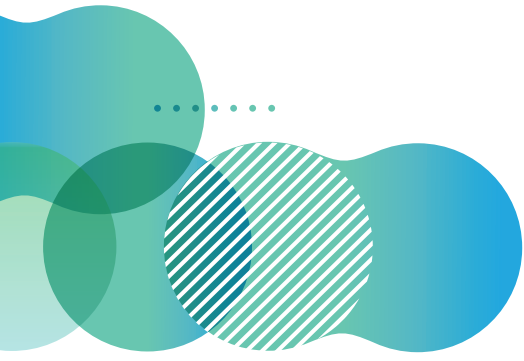
TEL. 033) 769-5500

FAX. 033-769-5545

limac.krila.re.kr

발행일 | 2023년 10월

발행인 | 조기현



2022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차보고서